

# 獨逸企業의 年次決算會計와 會計監査制度에 관한 研究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 國 租 稅 研 究 所

◇ 研究責任者 ◇

---

金 光 洙 ( 本研究所 研究委員 )  
( 江原大 教授・經營博 )

## 머 리 말

現代産業社會의 특징 중 하나는 기업활동의 증대에 따라 企業會計情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회계정보는 모든 기업활동의 매체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국가재정규모를 결정짓는 조세수입의 추정기초로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市場開放化의 급속한 진행 및 情報化의 촉진 등의 새로운 경제환경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선결과제는 기업회계정보의 국제화를 기할 수 있는 合理的 會計制度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회계제도의 개혁이 수차 이루어져 왔지만 이는 합리적인 제도를 추구하기 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미국제도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의 회계제도와 그 발전상은 거의 참작되지 못했다. 특히 오랫동안 법률적 기초 위에서 독립적으로 합리적 회계제도를 발전시키면서 많은 나라의 회계제도 생성에 영향을 미쳐온 독일에서도 최근 EU의 출범을 앞두고 1985년 이래 회계제도의 국제적 조정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회계제도의 國際化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나아가서 기업조세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獨逸企業의 年次決算會計와 會計監査制度”를 研究課題로 선정하고 독일 회계제도의 발전특성 및 방안을 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를 검토해 보기로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 찬동하여 공사간 바쁜 중에서 본 연구를 성심

것 수행하여 주신 江原大學校 會計學科 金光洙 教授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첨언할 것은 이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적 의견표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研究者의 個人的 意見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1998. 3.

韓國租稅研究所長 具 鍾 泰

# 目 次

|                              |    |
|------------------------------|----|
| I. 序論 .....                  | 11 |
| 1. 研究의 目的 .....              | 11 |
| 2. 研究의 體系 .....              | 12 |
| II. 獨逸企業의 年次決算會計 .....       | 14 |
| 1. 獨逸 企業會計의 體系 .....         | 14 |
| 가. 獨逸 企業會計法의 發展過程 .....      | 14 |
| 나. 獨逸 企業 年次決算會計의 體系 .....    | 18 |
| 2. 個別企業의 年次決算會計 .....        | 24 |
| 가. 年次決算書 作成의 法的 根據 .....     | 24 |
| 나. 貸借對照表計上規程과 原則 .....       | 26 |
| 다. 評價規程 및 原則 .....           | 29 |
| 라. 貸借對照表의 形式 및 內容 .....      | 32 |
| 마. 損益計算書의 形式 및 內容 .....      | 37 |
| 바. 註釋 .....                  | 40 |
| 사. 狀態報告書 .....               | 41 |
| 3. 콘체른 決算會計 .....            | 43 |
| 가. 콘체른 決算書의 目的과 法律的 根據 ..... | 43 |
| 나. 콘체른 決算書 作成範圍 .....        | 44 |
| 다. 連結原則 .....                | 47 |
| 라. 콘체른 貸借對照表 .....           | 48 |

|                       |    |
|-----------------------|----|
| 마. 콘체른 損益計算書 .....    | 52 |
| 바. 콘체른 註釋 .....       | 52 |
| 사. 콘체른 狀態報告書 .....    | 53 |
| 4. 年次決算書의 公示 .....    | 53 |
| 가. 概要 .....           | 53 |
| 나. 大規模 資本會社의 公示 ..... | 54 |
| 다. 中規模 資本會社의 公示 ..... | 55 |
| 라. 小規模 資本會社의 公示 ..... | 57 |
| 마. 公示關聯 其他事項 .....    | 57 |

### III. 獨逸의 會計監査制度 ..... 59

|                           |    |
|---------------------------|----|
| 1. 獨逸 會計監査制度의 體系 .....    | 59 |
| 가. 獨逸 會計監査制度의 概要 .....    | 59 |
| 나. 會計監査 對象企業 .....        | 60 |
| 다. 會計監査對象 콘체른 .....       | 62 |
| 2. 會計監査業務의 分擔 .....       | 62 |
| 가. 獨逸의 會計監査業務 分擔 .....    | 62 |
| 나. 獨逸의 會計監査 業務分擔 過程 ..... | 63 |
| 다. 獨逸의 公認會計士 制度 .....     | 66 |
| 라. 獨逸의 稅務士 制度 .....       | 68 |
| 마. 獨逸의 準公認會計士 制度 .....    | 71 |
| 3. 個別企業 會計監査 .....        | 72 |
| 가. 會計監査義務 .....           | 72 |
| 나. 會計監査人의 選任 .....        | 74 |
| 다. 會計監査의 內容 .....         | 77 |

|                             |     |
|-----------------------------|-----|
| 라. 會計監査人の 權利 .....          | 80  |
| 마. 會計監査意見 .....             | 80  |
| 바. 其他事項 .....               | 81  |
| 4. 公제론 會計監査 .....           | 82  |
| 가. 會計監査義務 .....             | 82  |
| 나. 會計監査人の 選任 .....          | 83  |
| 다. 公제론 會計監査 內容 .....        | 84  |
| 라. 公제론 會計監査機構 問題 .....      | 87  |
| 마. 會計監査意見 .....             | 88  |
| 5. 會計監査報告書 .....            | 88  |
| 가. 會計監査報告의 原則 .....         | 88  |
| 나. 會計監査報告書 作成의 一般原則 .....   | 89  |
| 다. 個別企業 會計監査報告書 .....       | 90  |
| 라. 公제론 會計監査報告書 .....        | 96  |
| 마. 任意會計監査에 대한 會計監査報告書 ..... | 98  |
| 6. 會計監査實務基準 .....           | 98  |
| IV. 要約 및 示唆點 .....          | 101 |
| 1. 要約 .....                 | 101 |
| 가. 獨逸 年次決算會計의 要約 .....      | 101 |
| 나. 獨逸 會計監査制度의 要約 .....      | 106 |
| 2. 示唆點 .....                | 108 |

## 表 目 次

|                                                  |    |
|--------------------------------------------------|----|
| <表Ⅱ-1> 獨逸 商法上 資本會社の 區分 .....                     | 22 |
| <表Ⅱ-2> 資本會社の 區分과 年次決算書 作成 및 確定 .....             | 23 |
| <表Ⅱ-3> 獨逸의 貸借對照表 樣式(小規模 資本會社에 適用) .....          | 32 |
| <表Ⅱ-4> 中規模 및 大規模 資本會社에 對한 貸借對照表(借邊項目) ·          | 33 |
| <表Ⅱ-5> 中規模 및 大規模 資本會社에 對한 貸借對照表(貸邊項目) ·          | 34 |
| <表Ⅱ-6> 總原價法에 의한 損益計算書 .....                      | 38 |
| <表Ⅱ-7> 賣出原價法에 의한 損益計算書 .....                     | 39 |
| <表Ⅱ-8> 狀態報告書의 作成과 內容 .....                       | 42 |
| <表Ⅱ-9> 콘체른 決算書 作成對象 .....                        | 46 |
| <表Ⅱ-10> 中規模 資本會社가 提出할 略式 貸借對照表에서<br>補完될 內容 ..... | 56 |
| <表Ⅲ-1> 會計監查對象 個別 資本會社の 區分 .....                  | 60 |
| <表Ⅲ-2> 外部會計監查 對象 콘체른 .....                       | 62 |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獨逸 經濟는 유럽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건실하여 EU를 선도하고 있다. 1997년 독일은 10여년만에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건실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비록 구조적인 실업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독일 경제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강력한 競爭力을 갖추고 있다. 독일 경제의 이러한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독일 기업의 경쟁력에 있다. 독일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독일 기업의 경쟁력 요인중에 하나가 獨逸 特有의 企業會計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국제화와 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비록 各國의 會計制度가 收斂하고 있는 경향은 있지만 보수주의와 주주 이외의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등하게 중시하는 독일 특유의 實體維持的 企業會計시스템은 독일 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현재 IMF 경제위기로 대변되는 한국경제의 극복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結合財務諸表의 작성 및 회계감사의 강화 등 국내 회계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독일 회계시스템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회계시스템의 양대 축을 이루는 年次決算會計(Jahresabschluß)와 會計監査(Prüfung)에 대해 논의한다.

年次決算會計란 기업들의 1년의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의 작성을 중심으로 한 회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무회계의 핵심을 이

루는 분야이다. 특히 독일 회계법(상법)은 개별 기업차원의 연차결산회계 및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콘체른(기업집단) 결산회계와 콘체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체계적 입법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기업의 연차결산회계와 회계감사에 대한 논의는 國內企業의 經營透明性 提高와 관련해 時宜適切한 것이며, 국내 회계제도의 改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本 研究의 目的은 독일기업의 회계제도를 연차결산회계와 회계감사의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있다. 개별기업차원의 연차결산회계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콘체른 차원의 연차결산회계와 회계감사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회계제도에 대한 示唆點을 도출하는 것도 연구목적이 있다.

## 2. 研究의 體系

본 연구에서는 먼저 獨逸 會計法の 發展過程을 간단히 살펴본다. 독일 회계법은 200년 이상의 법률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독일 회계법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본다. 특히 유럽통합과정에서 유럽共同體 次元의 會計規程調和 작업에 따라 독일 회계법이 받은 영향을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 회계제도의 핵심인 年次決算會計의 체계를 基本的 決算會計와 補充的 決算會計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本論에서는 연차결산회계의 본질적 내용을 개별기업과 콘체른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서술한다. 개별기업과 콘체른의 연차결산회계와 相关해 법률적 근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식, 상태보고서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특히 콘체른 결산회계와 相关해서

는 콘체른 決算書의 目的, 連結原則 및 連結對象의 범위 등을 자세히 다룬다.

독일의 外部會計監査의 핵심은 독일 기업의 연차결산회계의 내용을 감사하는 것이다. 독일 회계감사와 관련해 먼저 독일 회계감사의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할 對象 企業의 區分에 대해 서술한다. 이어서 개별기업과 콘체른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독일 기업의 연차결산회계와 회계감사의 주요 特徵들을 요약하고 국내 회계제도와 관련된 示唆點을 도출한다.

## II. 獨逸企業의 年次決算會計

### 1. 獨逸 企業會計의 體系

#### 가. 獨逸 企業會計法の 發展過程

##### (1) 獨逸 會計法の 生成

독일 회계법이 법전 형식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794년 普通國家法(Allgemeines Landrecht)에서 처음으로 회계법의 제목으로 회계규정을 광범위하게 제정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이 법은 상당부분 사바리법전(Code Savary)으로 일컬어지는 1673년에 제정된 프랑스 상사조례를 모방한 것이었다.

그 후 많은 改革案들에서 경제상태의 변동과 商社法的 學說이나 判例 등이 반영되면서 독일 고유의 회계법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혁안들이 주목될 수 있다.

- 1839년 Württemberg 王國의 商法典 草案
- 1849년 獨逸의 普通商法典 草案
- 1856년 프러시아의 商法典 第1草案
- 1861년 普通獨逸商法典(Allgemeines Deutsches Handelsgesetzbuch)

상기의 상사법규정의 제정 노력과 함께 주식회사를 위한 회사법도 다음의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1843. 11. 9의 프러시아 株式法

- 1856. 3. 29의 株式條例
- 1864. 2. 15의 市民株式會社에 關한 法
- 1870. 6. 11의 株式法 勅令(합자회사와 주식회사에 관한 법)
- 1884. 7. 18의 株式法 勅令(합자회사와 주식회사에 관한 법)

이러한 독일 회계법 胎動期는 1897년 商法典의 제정으로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97년의 상법전을 통하여 그 이전까지 통용되어 오던 회계법은 간단한 조문변경과 약간의 보완과 함께 큰 변화없이 받아 들여졌다. 특히 중요한 것은 1897년의 상법전 이후에 불완전한 법적 회계규제 때문에 正規簿記의 原則들(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 GoB)이 회계법규에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현행회계법을 회계제도와 판례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조정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2) 株式法の 發展

世界大恐慌에 기인한 수많은 기업들의 붕괴, 특히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의 증권시장의 붕괴는 법제정을 통한 주식법의 일대 개혁을 추구하는 원인이 되었다. 독일은 많은 기업들이 도산한 이후 1931년 9월 19일 '주식법, 은행감축 그리고 조세감면 등에 관한 대통령령(株式令)'을 공포하였다. 이 주식령에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의 항목 분류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수용되고, 연차결산을 위하여 상법전의 일반규정 이외에도 주식회사를 위한 특별회계규정과 정규부기의 원칙들이 준수되도록 하였으며, 평가규정이 확대·수정되었다.

1931년의 주식령 이후 진행되어온 주식법의 개혁논의들이 1937년의 株式法에서 고려되기는 하였지만, 결산에 관한 규정들에서 중요

한 변화는 없었다. 1965년 9월 6일에 주식법이 제정되기까지 1937년의 주식법규정들은 수많은 초안들과 권고안들에서 비판·수정되었다. 1965년의 株式法 會計規程들은 이론적 발전과 학계나 실무에서 제기된 요구들을 고려하여 보충·확대된 것이었다.

1965년의 주식법은 기존의 주식법 회계규정들과 비교하여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의무적으로 규정된 보고식에 따라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새롭게 분류하였다. 둘째, 대차대조표 항목의 분류가 개선되었다. 셋째, 평가규정의 개선을 통해 비밀적립금의 설정가능성을 대폭 배제하였다. 넷째, 영업보고서의 보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제가 이루어졌다. 다섯째, 대차대조표작성 및 이익처분법의 개혁이 있었다. 이밖에도 1965년의 주식법은 주주의 법적 지위 향상, 통일적 콘체른 법규 마련, 공시확대와 경영자의 보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1965년의 株式法 改正은 그 이전의 개혁들에서 보다 회계이론적 인식들과 요구사항들이 더 많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시모델과 발전추세도 고려하여 독일 회계법 형성의 分水嶺이 되었다.

### (3) 유럽共同體 會計指針과 獨逸 會計法の 調整

1957년 3월 25일의 로마조약이후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가들은 하나의 經濟共同體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경제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의 조화와 관련해 유럽공동체기구들은 유럽경제공동체협약 제54조 제3항 제G호에 의거하여 會員國들의 會社法 調和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법률 통합을 이루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공동체기구들의 결의는 가맹국들에 대하여 명령, 지침 또는 권고 등으로 공포될 수 있지만, 공동체기구들의 제한된 권한때문에 지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지침들은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가

진 법이 아니며, 이 보다는 오히려 가맹국들의 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동경제권의 생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럽공동체 국가들내에서 기업에 관한 정보소통의 장벽을 철폐하자는 것이었다.

기업에 관한 정보의 상당부분이 기업회계를 통하여 얻어지기 때문에, 외부회계의 경우, 여러 회원국들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결산 보고서, 결산감사 및 공시에 관하여 비교가능성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자본회사들(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각국 회계규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침들을 제정하였다.

- 年次決算(Jahresabschluss)과 註釋(Anhang)의 樣式과 內容에 關한 1978年 7月 25日 第4次 指針(貸借對照表指針 ; Bilanzrichtlinie)
- 콘체른 會計에 關한 1983年 6月 14日의 第7次 指針(콘체른指針 : Konzernrichtlinie)
- 會計資料 義務監査 受任者の 承認에 關한 1984年 4月 10日의 第8次 指針(會計監査人指針: Prüferrichtlinie)

그러나 이 지침들이 많은 任意規程들을 갖고 있고 회원국들에서 이 규정들의 상이한 시행이 허용됨으로써 타협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즉 단일화를 포기하고 각 국가법에 맞추어 가능한 한 유연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독일의 改正會計法은 1985년 12월 19일 “會社法の 調整을 위한 유럽共同體 委員會의 第4次, 第7次 그리고 第8次 指針 등의 履行을 위한 法律(EC會計指針變換法; Bilanzrichtliniengesetz)”로 공표되었다. 많은 법령들을 변경시킨 이른바 條項法(Artikel-Gesetz)으로 만

들어진 EC회계지침변환법은 주식법과 특히 상법에서의 변화는 물론 기타의 법률, 예컨대 유한회사법, 조합법 그리고 공시법 등에서도 상응하는 규정들의 조정을 초래하였다. 특히 EC회계지침변환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독일 상법 제264조부터 제335조까지의 규정들이 독일 기업회계의 핵심을 이루는 연차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나. 獨逸 企業 年次決算會計의 體系

##### (1) 決算會計의 制度的 基礎

독일의 상사회계가 영·미권 국가들에서와는 달리 법 중심의 제도적 기초위에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은 이미 독일 회계법의 역사적 발전에서도 보여준 바와 같이 독일 회계제도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다. 독일의 상사법적 결산회계의 제도적 기초로 制定法(Kodifiziertes Recht) 이외에도 判例(Rechtsprechung)와 正規簿記의 原則(Grundsätze ordnungsmaßiger Buchführung: GoB)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식법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독자적인 회계제도를 구축하여 왔지만, 최근 유럽공동체 회계지침과의 법률조정을 통하여 모든 기업의 기본적 회계의무들(결산방식의 작성, 보고 및 감사)에 관한 制定法 規程들을 商法典 (Handelsgesetzbuch : HGB)에서 총괄하는 이른바 會計法の 統合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商法典의 會計法도 이익구분과 공시 등의 절차적 사항들에 관해서는 여전히 法的 形式에 따라 株式法(Aktiengesetz; AktG), 有限會社法(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G), 組合法(Genossenschaftsgesetz), 公示法(Publizitäts-Gesetz) 및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들을 통하여 보충되고 있다. 독

일에서는 이 밖에도 제정법 규정들의 불완전성과 고정성에 기인하여 판례와 正規簿記의 原則들(GoB)이 회계실무에서 법적 규정들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보충규범들로 주목되어 왔다. 그 중 특히 正規簿記의 原則은 우리 나라의 회계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일의 개정법에서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 判例도 오랫동안 제정법규정들의 보충규범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그동안 수차의 법개정을 통하여 많은 판례와 이론적 발전이 법규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상사회계에서의 판례의 중요성은 점차 퇴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독일 회계의 제도적 기초로서 판례의 중요성이 거론된다면 이는 대부분 稅務會計에 관련된 것들이다.

## (2) 獨逸 企業의 決算會計의 體系

독일에서는 상사법의 개정과 회계법의 통합을 통하여 개인상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상사회계에 관한 필수적 사항들(결산의 작성, 공시 및 감사)을 商法典(HGB)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상법전의 개정된 회계규정들은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법 시행의 실제성을 고려하여 자본회사를 規模에 따라 3分하여 中·小 資本會社들과 個人商人을 포함한 非資本會社들에게는 결산작성 및 공시의 범위 그리고 감사 등과 관련하여 경감조치의 허용 및 면제의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기업의 결산회계는 독일의 모든 상인에 대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基本的 決算會計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회사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補充的 決算會計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들은 대부분 자본회사들에 관한 것이며, 개인상인을 포함한 비자본회사들의 결산회계는 주로 일반조항으로 제정되어 있는 正規簿記의 原

則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 基本的 決算會計

기본적 결산회계의 핵심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이다. 독일 상법은 개인상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결산을 위하여 貸借對照表(Bilanz)와 損益計算書(Gewinn- und Verlustrechnung)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에서 자본회사들의 대차대조표는 計定式(Kontoform)으로, 직전회계년도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 항목들의 분류 및 배치는 규정된 諸原則들에 의거해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일반원칙들은 우리 나라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세부규칙들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독일 기업의 기본적 결산회계의 제2요소인 損益計算書(Gewinn- und Verlustrechnung)의 작성에 대해 독일 상법은 제4차 EC회계지침에 따라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래 독일 손익계산서의 특징은 무엇보다 고유의 總原價法(Gesamtkostenverfahren)에 의한 손익계산서 작성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EC회계지침에 따라 改正法은 손익계산서 작성을 위하여 英·美式的 賣出原價法(Umsatzkostenverfahren)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두가지 작성방식은 그 선택에 있어서 임의성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관습에 따라 여전히 총원가법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작성원칙들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출원가법에서만 의거하여 작성되는 한국의 손익계산서와 비교하여 항목구분이나 내용에서 많은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나) 資本會社의 補充的 決算會計

독일 개정법은 유럽공동체 제4차 지침의 인정을 통하여 中規模 이상의 자본회사들에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외에도 註釋

(Anhang)을 결산요소로서 새로이 추가규정하고, 보충적으로 狀態報告書(Lagebericht)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같은 成果處分計算書(Ergebnisverwendungsrechnung)와 資本흐름計算書(Kapitalflubrechnung)가 결산을 위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독일에서는 성과처분계산이 한국에서 처럼 독자적인 결산보고서로서 중시되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결산시점이전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성과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성과처분계산을 손익계산서의 연차손익에 연이어 표시하던가 아니면 註釋(Anhang)에 첨부하여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도 또한 주식회사들에 대해서만 강제성을 갖고 있어서 모든 자본회사들을 위하여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 비록 작성의무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 작성 내용에서는 우리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資本흐름計算書에 관해서는 독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의 유동성과악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많은 논쟁이 거듭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상사법적 결산에서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보수단으로서의 資本흐름計算書의 고유기능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작성하여 결산을 보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보고서에도 포함시켜 나타내고 있다. 독일 公認會計士協會의 常任專門委員會(Hauptfachausschuß : HFA)에서도 결산보충과 아울러 資本흐름計算書 작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작성지침을 공표한 바 있다.

#### (다) 資本會社の 區分과 年次決算書 作成義務

앞서 간단히 설명하였듯이 독일의 연차결산회계는 자본회사를規模에 따라 3분하여 대규모 자본회사가 아닌 中・小規模의 資本會社

들과 기타 상인들에 대해 각각 연차결산서의 작성, 공시 및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 상법상 자본회사의 구분은 제267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表Ⅱ-1>과 같다.

<表Ⅱ-1> 獨逸 商法上 資本會社の 區分

| 구 분           | 구 분 요 건<br>(3가지중 2가지 충족)<br>(단위 10,000 DM)                                                               |
|---------------|----------------------------------------------------------------------------------------------------------|
| 소 규 모 자 본 회 사 | 자산총액 $\leq 531$<br>연간매출액 $\leq 1,062$<br>연간평균종업원수 $\leq 50$ 명                                            |
| 중 규 모 자 본 회 사 | $531 < \text{자산총액} \leq 2,124$<br>$1,062 < \text{연간매출액} \leq 4,248$<br>$50 < \text{연간평균종업원수} \leq 250$ 명 |
| 대 규 모 자 본 회 사 | 자산총액 $> 2,124$<br>연간매출액 $> 4,248$<br>연간평균종업원수 $> 250$ 명                                                  |

한편 證券市場에 上場된 資本會社는 상법 제267조 제3항 제2문에 따라 위 구분과 관계없이 항상 대규모 자본회사로 간주된다. 그리고 동 기준에서 年間 平均從業員數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에 고용된 종업원을 합산하여 4로 나눈 것이다. 각각의 경우 해외에서 고용된 직원도 포함된다. 다만 수습사원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본회사의 구분에 따라 小規模, 中規模, 大規模 資本會社와 그 이외의 일반 상인들의 경우 年次決算書와 관련된 주요 差異를 보면 <表Ⅱ-2>와 같다. 예를 들어 자본회사를 제외한 모든 상인들의 경우 결산서 작성과 관련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을 작성하면 되지만, 소규모 자본회사의 경우 상태보고서를 제외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주석을 작성해야 한다. 中規模와 大規模의 자본회사는 모두 작성해야 한다.

作成期限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 자본회사 이외의 상인은 적절한 사업단계에 맞추어 작성하면 되고, 소규모 자본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개월 내에 작성해야 하며, 중규모와 대규모 자본회사의 경우 3개월 내에 작성해야 한다. 年次決算書의 確定과 관련해서도 역시 차이가 있다. 자본회사 이외의 상인의 경우 확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소규모 자본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1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하며, 중규모 및 대규모 자본회사는 회계연도 종료후 8개월 이내에 연차결산서를 확정해야 한다.

<表Ⅱ-2> 資本會社の 區分과 年次決算書 作成 및 確定

| 구 분        |       | 자본회사<br>이외의<br>모든 상인  | 소규모<br>자본회사 | 중규모<br>자본회사 | 대규모<br>자본회사 |
|------------|-------|-----------------------|-------------|-------------|-------------|
| 연차결산서      | 대차대조표 | 작성                    | 작성          | 작성          | 작성          |
|            | 손익계산서 | 작성                    | 작성          | 작성          | 작성          |
|            | 주 석   | 작성의무 없음               | 작성          | 작성          | 작성          |
| 상 태 보 고 서  |       | 작성의무<br>없음            | 작성의무<br>없음  | 작성          | 작성          |
| 연차결산서 작성기한 |       | 적절한<br>기한내에<br>작성하면 됨 | 6개월 내       | 3개월 내       | 3개월 내       |
| 연차결산서 확정기한 |       | 확정할<br>필요는 없음         | 11개월 내      | 8개월 내       | 8개월 내       |

(라) 獨逸 決算會計에 關한 本 研究의 論議範圍

앞서 논의한 기본적 결산과 보충적 결산으로의 구분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보충적 결산중 성과처분계산서와 자본흐름계산서를 제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식 및 상태보고서를 다룬다. 이는 법률적 측면에서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이 연차결산서의 요소와 상태보고서이기 때문이다. 연차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식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과 콘체른의 연차결산서와 상태보고서를 다룬다. 그리고 연차결산서와 콘체른 연차결산서의 공시와 관련된 사항도 다룬다.

## 2. 個別企業의 年次決算會計

### 가. 年次決算書 作成의 法的 根據

#### (1) “EC會計指針變換法(Bilanzrichtliniengesetz (BRG))”

1985년 12월 19일의 “EC회계지침 변환법”의 제정으로 기업의 外部會計監査(externe Rechnungslegung der Kaufleute)에 대한 통일적 법률근거가 마련되었다. 독일 상법 제3권의 §§ 238-263에는 모든 企業들(Kaufleute)에 적용되는 회계처리(Buchführung)와 年次決算書(Jahresabschluß; annual accounts; financial statements)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 §§ 264-288에는 개별 年次決算書を 보완하는 규정들이 있으며, §§ 290-314에는 資本會社(Kapitalgesellschaften; AG, KGaA, GmbH)의 콘체른 決算書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

資本會社の 年次決算書에 대한 보완적 규정들은 제4차 EC회계지침의 규정들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 내용들은 각 회원국의

입법당국이 각국의 資本會社の 年次決算書 관련 규정들을 EC규정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적용되게 되었다. 독일 상법상의 年次決算書에 대한 규정들은 독일주식법, 유한회사법, 조합법(GenG) 및 특정산업에 대한 법률인 VAG(보험회사법) 및 KWG(금융기관법)에 따라 보완되고 있다. 資本會社는 아니지만 특정한 규모의 기준(일반적으로 총자산, 매출액 및 종업원수)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시법(PublG)이 年次決算書에 대한 특별 규정들을 정하고 있다.

## (2) 一般規程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年次決算書의 개념은 §§ 243 HGB이하에서 확정되어 있다. 年次決算書의 구성요소는 貸借對照表(Bilanz), 損益計算書(Gewinn- und Verlustrechnung)이다. 법률은 年次決算書가 正規簿記의 原則(Grundsätzen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에 맞게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一般原則(作成原則; Aufstellungsgrundsatz)을 정하고 있다.

資本會社에 대해서는 § 264HGB에 따라 EC회계지침에 의해 一般原則이 확대되어 年次決算書는 註釋(Anhang)에 의해 보완되도록 하고 있다. 註釋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年次決算書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3개월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正規簿記의 原則을 고려하여 기업의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에 대한 모습의 실제적 관계를 전달해야 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기업의 상태에 대한 모습의 실제적 관계를 전달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註釋이 제공한다.

年次決算書의 작성에 대한 이러한 擴大된 一般原則(erweiterter Generalnorm)의 의미는 독일학계에서 아직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

고 있다. 다수설에 따르면 이 擴大된 一般原則은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법률상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3) 正規簿記의 原則(GoB;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年次決算書 작성의 일반원칙은 正規簿記의 原則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正規簿記의 原則은 법률규정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그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正規簿記의 原則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회계처리와 年次決算書의 목적들로부터 유도되고 있다.

### 나. 貸借對照表計上規程과 原則

독일 회계에서 貸借對照表計上은 完全性原則(Grundsatz der Vollständigkeit)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모든 資産(Vermögensgegenstände)과 負債(Verbindlichkeiten) 및 決算移延計定(Rechnungssabgrenzungsposten) 등은 대차대조표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242 Abs. 1 HGB). 그 계상에 대한 입증은 §§ 240, 241에 따른 目錄調查(Inventar)를 통해 이루어진다.

#### (1) 資産

모든 자산에 대해서 대차대조표항목으로 인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거래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創業費(Gründungsaufwendungen)와 自己資本의 調達을 위한 費用(Aufwendungen zur Beschaffung des Eigenkapitals)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禁止된다 (§ 248 HGB).

### (2) 移延計定(Bilanzierungshilfen)과 營業權(Firmenwert)

移延計定(Bilanzierungshilfen)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다. 資本會社는 ‘開業 및 事業의 擴張과 關聯된 費用(Aufwendungen für die Ingangsetzungen und Erweiterung des Geschäftsbetriebs, § 269 HGB)’과 ‘移延法人稅借(aktive Latente Steuern, § 274 Abs. 2 HGB)’를 貸借對照表에 계상할 수 있다. 이연계정은 실체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액감소의무가 있다. 이연계정의 금액이 배당후 사용가능한 이익준비금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익배당이 가능하다.

영업권의 경우에도 복합적 요소를 갖고 있다. 영업권은 § 255 Abs. 4 HGB에 따라 계정과목으로 인식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매년 25%씩 상각을 하거나 내용년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 (3) 負債 및 充當金(Schulden und Rückstellungen)

모든 ‘辨償해야할 債務들(unbedingte Verbindlichkeiten)’과 ‘移延法人稅貸(passive Latente Steuern, § 274 Abs. 1 HGB)’는 대변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貸邊項目 計上義務(Passivierungspflicht)는 다음의 충당금 항목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불확실한 채무에 대한 충당금’, ‘변동적 거래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한 충당금(§ 249 Abs. 1 Satz 1 HGB)’,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제공해야할 보증에 대한 충당금’, ‘중단된 수선작업이 3개월 이내에 재개될 경우를 위한 수선충당금’, ‘다음 회계년도에 원상복구를 위한 잔존물 정리를 위한 충당금(§ 249 Abs. 1 Satz 2 HGB)’ 등이다. ‘기타 다른 부채성 충당금’에 대해서는 § 249 Abs. 1 Satz 3, Abs. 2 HGB에 따라서 貸借對照表計上에 대한 選擇權이 있다.

## (4) 決算移延計定(Rechnungsabgrenzungsposten)

決算移延計定은 지출과 유입이 비용발생 및 수익발생과 회계연도에서 차이가 날 때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이다. 독일상법 제250조에 따르면 차변항목 성격의 決算移延計定은 결산일 이전에 지출을 하였지만 결산일 이후의 특정시점에 비용이 되는 항목을 말하며, 대변항목 성격의 決算移延計定은 결산일 이전에 수입이 있었지만 결산일 이후에야 비로서 수익이 되는 항목을 말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계상될 수 있다. 특별한 조건하에서 關稅(Zölle), 消費稅(Verbrauchssteuern) 및 割引額(Disagio) 차변항목 성격의 決算移延計定으로 계상할 수 있다(§ 250 Abs. 1 u. Abs. 3 HGB).

## (5) 資本(Eigenkapital)

독일상법상 자본은 대차대조표에서 차변합계에서 부채, 충당금, 대변항목 성격의 決算移延計定을 합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 272 및 § 266 Abs. 3 HGB에 따라 資本會社의 年次決算書에서는 자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資本金(gezeichnetes Kapital)’, ‘資本準備金(Kapitalrücklage)’, ‘利益準備金(Gewinnrücklage)’, ‘前期移越利益/前期移越損失(Gewinnvortrag/Verlustvortrag)’, ‘年次利益/年次損失(Jahresüberschuß/Jahresfehlbetrag)’, 또는 ‘貸借對照表利益/貸借對照表損失(Bilanzgewinn/Bilanzverlust)’ (§ 268 Abs. 1 HGB).

## (6) 準備金性格의 特別計定(Sonderposten mit Rücklageanteil)

독일 대차대조표에서 ‘準備金性格의 特別計定(§§ 247 Abs. 3, 273 HGB)’이란 우리나라의 세법상 준비금과 유사한 성격의 계정과목이다. 이 특별계정의 가장 큰 특징은 課稅目的上 稅法과 商法の 適用

을 일치시키기 위해 計上을 許容한 計定이라는 점이다. 준비금성격의 특별계정의 설정을 통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의해 해체되면서 과세된다. 준비금성격의 특별계정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는 경우 자본계정과 충당금계정 사이에 계상하고 있다.

#### 다. 評價規程 및 原則

기업의 형태에 따라 年次決算書 계정의 평가는 해당 법에 따라 다르며, 資本會社에 대한 평가규정과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원칙측면에서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1) 一般評價原則들

평가원칙의 일부분이 독일 상법 제25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貸借對照表 同一性原則(Bilanzidentität), 繼續企業原則(Unternehmensfortführung), 個別評價原則(Einzelbewertung), 保守的 評價原則(vorsichtige Bewertung), 貸借對照表日 現在 評價原則(Stichtagsprinzip), 實現主義原則(Realisationsprinzip), 費用과 收益의 區分原則(Prinzip der Abgrenzung von Aufwendungen und Erträgen), 評價繼續性原則(Grundsatz der Bewertungsstetigkeit)이다. 이러한 원칙들과 다른 평가는 타당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資本會社의 경우 이러한 원칙들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면 註釋에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 (2) 모든 企業들에 適用되는 評價의 一般規程들

차변항목의 계정들에 대한 평가에서 固定資産(Vermö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의 상한선은 자산의 取得原價(Anschaffungskosten) 또는 製造原價(Herstellungskosten)이다. 자산의 效用(Nutzung)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고정자산은 § 253 Abs.2 HGB에 따라 정기적으로 減價償却(Abschreibung)되어야 한다. 감가상각으로 감소된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는 다음 회계연도에 평가의 상한선이 된다.

독일 상법상 減價償却(Abschreibungen)이란 용어와 관련해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독일에서 감가상각의 용어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에 따른 가치감소뿐만 아니라 자산의 모든 유형의 가치감소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자산의 시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고정자산에 대해 低價(niedrigere Werte)로 계상할 수 있다. ① 價額의 減少가 持續적으로 예상되는 경우(bei voraussichtlich dauernden Wertminderungen) 감소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一時的인 가액감소의 경우 감소된 가액을 계상할 수도 있다(§ 253 Abs. 3 HGB). 이 가액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② 合理的인 商人의 判斷(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에 의할 때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253 Abs. 4 HGB)이다. 마지막으로 ③ 稅法上(aus der Steuerbilanz) 인정되는 경우에 저가로 계상할 수 있다(§ 254 HGB).

流動資産(Gegestände des Umlaufvermögens)의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 또는 제조원가로 평가될 수 있다.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소위 '嚴格한 低價主義(strenges Nierstwertprinzip)'가 적용되어 가액감소의 예상기간에 상관없이 증권시장가격 또는 시장가격에 따른 저가로 평가해야 한다(§ 253 Abs. 1 Satz 1 und 2 HGB). 따라서 미래의 가격변동에 따라 앞으로 변동될 수도 가액을 미리 고려함으

로써(§ 253 Abs.2 Satz 3 HGB에 따른 未來價額(Zukunftwert)) 대차대조표일 기준원칙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유동자산의 경우에 더 합리적인 상인의 판단에 의할 때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와 세법상 인정되는 경우에 저가로 계상할 수 있다.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저가평가는 가액감소의 원인이 제거된 경우에도 계속 維持될 수 있다(Beibehaltungswahlrecht nach § 253 Abs. 5 HGB).

대차대조표의 대변항목은 § 253 Abs. 1 Satz 2 HGB에 따라 평가한다. 負債는 상환해야할 가액으로 평가하고,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없는 연금지급의무의 경우 현금가액으로 평가하며, 충당금의 경우 합리적 상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보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 (3) 資本會社에 대한 評價의 特別規定

앞의 일반적인 평가규정과 달리 資本會社에 대해서는 특별한 평가규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기업들의 경우 저가주의 적용을 통해 비밀적립금을 설정할 가능성이 많지만 資本會社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된다. 資本會社의 경우 제4차 EC회계지침을 반영한 §§ 279 및 280 HGB에 따라 고정자산의 경우 저가적용에 따른 가액감소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시적인 가액감소의 경우 저가의 적용에 따른 가액감소는 투자자산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279 Abs. 1 HGB).

과세상 허용된 저가적용의 경우에도 逆基準性의 原則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독일 기업회계상 상법에 따른 계정의 인식과 평가는 과세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지만(基準性原則; Maßgeblichkeitsprinzip), 과세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업회계에서 먼저 계상하거나 평가해야 하는 역기준성원칙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資本會社의 경우 과세상 필요한 低價適用은 먼저 企業會計에

서 세법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합리적 상인의 판단에 의한 價額差減은 資本會社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79 Abs. 1 HGB). 한편 저가에 의한 가액감소가 있는 이후에 가액감소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제거된 경우 價額回復義務가 있다(§ 280 Abs. 1 HGB). 그러나 가액회복을 하지 않고 저가평가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역기준성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저가평가액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280 Abs. 2 HGB).

#### 라. 貸借對照表의 形式 및 內容

독일 상법 제266조는 독일 상법 제267조에 따른 대규모 資本會社의 대차대조표의 최소한의 계정구분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資本會社는 축약된 계정과목들로 표시된 제한적 의미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

<表Ⅱ-3> 獨逸의 貸借對照表 樣式(小規模 資本會社에 適用)

| 차    변          | 대    변         |
|-----------------|----------------|
| A. 고정자산         | A. 자기자본        |
| 1. 무형자산         | 1. 자본금         |
| 2. 유형자산         | 2. 자본잉여금       |
| 3. 투자자산         | 3. 이익잉여금       |
| B. 유동자산         | 4. 이월이익잉여금     |
| 1. 재고자산         | / 이월결손금        |
| 2. 채권들과 기타자산항목들 | 5. 년차이익 / 년차손실 |
| 3. 유가증권         | B. 부채성 총당금     |
| 4. 수표, 현금, 예금등  | C. 부채          |
| C. 이연항목들        | D. 이연항목들       |

<表Ⅱ-4> 中規模 및 大規模 資本會社에 대한 貸借對照表(借邊項目)

---

A. 고정자산

I. 무형자산

1. 사용권리, 특허권, 기타 유사한 권리 및 가치와 그러한 권리 및 가치에 대한 사용료
2. 영업권
3. 무형자산 관련 선급금

II. 유형자산

1. 토지, 토지와 동일한 권리, 건물 및 제3자의 토지에 건축된 건물
2. 기계설비
3. 기타 설비 및 사업시설
4. 유형자산 관련 선급금 및 건축중인 건물

III. 투자자산

1. 관계회사(결합기업범위)에 대한 출자지분
  2.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3. 출자지분(주식 등)
  4. 출자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
  5. 고정자산에 대한 증권
  6. 기타 대여금
- 

B. 유동자산

I. 재고자산

1. 원료, 보조원료
  2. 재공품
  3. 제품
  4. 재고자산 관련 선급금
-

---

II. 채권들과 기타자산항목들

1. 매출채권
2. 관계회사 매출채권
3. 출자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4. 기타자산항목들

III. 유가증권

1. 관계회사 출자지분
2. 자기회사 출자지분
3. 기타 유가증권

IV. 수표, 현금, 예금 등

---

C. 이연항목들

---

<表 II-5> 中規模 및 大規模 資本會社에 대한 貸借對照表(貸邊項目)

---

A. 자기자본

I. 자본금

II. 자본잉여금

III. 이익잉여금

1. 법정이익준비금
2. 자기주식준비금
3. 정관상 이익준비금
4. 기타 이익준비금

IV.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V. 년차이익 / 년차손실

---

---

B. 부채성충당금

1. 연금충당금 및 기타 유사한 의무에 대한 충당금
  2. 조세충당금
  3. 기타 충당금
- 

C. 부채

1. 차입금,  
    그 중 전환가능한 것:
  2. 금융기관채무
  3. 주문관련 선수금
  4. 외상매입금 등 거래 관련 채무
  5. 어음인수 및 자체 어음발행에 따른 채무
  6.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
  7. 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채무
  8. 기타 채무  
    그 중 조세관련 채무  
    그 중 사회보장관련 채무
- 

D. 이연항목들

---

중규모의 資本會社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資本會社와 같은 경감은 없으며, 다만 대차대조표의 공시와 관련해서는 制限의 意味의 貸借對照表를 사용할 수 있다(§ 327 Abs. 1 HGB). <表Ⅱ-3>의 대차대조표는 중요 항목들만을 나타내고 있는 소규모 자본회사들에게 허용된 약식 대차대조표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규모 또는 대규모의 자본회사들의 대차

대조표는 물론 상기 예시된 바의 항목들을 다시 세분하여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最低必須의 項目分類(Mindestgliederung)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266 HGB). <表Ⅱ-4>와 <表Ⅱ-5>가 중규모 및 대규모 자본회사에 적용되는 대차대조표의 양식을 나타낸 것이다.

<表Ⅱ-4>와 <表Ⅱ-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獨逸의 貸借對照表에서는 항목배열이 고정성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순에 의한 한국의 대차대조표 항목배열과 역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항목들의 분류를 위하여 특별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고정자산에 관한 法的 定義(Legaldefinition), 즉 “企業目的에 長期間 寄與하는 資産”에 의거하여 자산항목들을 구분하고 있다.

투자자산은 우리나라처럼 대차대조표에서 투자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장기성 예금과 투자부동산 등이 투자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거나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移延項目(Rechnungsabgrenzungsposten)은 한국의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독일 상법은 보수적 상황에서 차변계상항목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연항목들로서 선급보험료, 선급집세 등의 선급비용이 계상되고 있다.

또한 독일 개정상법은 자산의 감가상각을 위하여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산항목들은 償却額을 공제한 償却殘額만이 계상된다. 그러나 독일 상법은 자본회사들의 대차대조표작성을 위하여 總額主義(Bruttoaussweisprinzip)에 따라 중규모이상의 자본회사들에게는 固定資産明細書(Anlagegitter)를 별도로 작성하여 여기에 취득원가, 상각액, 그리고 상각잔액표 등을 명시하고 이를 대차대조표 또는 註釋(Anhang)에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산과는 대조적으로 부채에서는 상이한 항목분류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큰 차이점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充當金(Rückstellungen)이 부채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우리의 부채 항목들과 내용상 다른 것은 없다.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구분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의 금액은 주기 하도록 하고 있다(§ 268 HGB).

자본항목의 분류에서도 改正 商法으로 인해 별다른 특징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改正 商法에서는 구법에서 독립적으로 분류되던 모든 자본항목들을 영·미에서처럼 自己資本(Eigenkapital)의 상위개념하에서 통합하여 나타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조계상항목의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처럼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건설이자 등의 자본차감항목은 나타나지 않는다.

#### 마. 損益計算書의 形式 및 內容

제4차 EC會計指針에서 허용한 4가지 손익계산서 양식들 중 독일 입법당국은 總原價法(Gesamtkostenverfahren)에 의한 損益計算書와 賣出原價法(Umsatzkostenverfahren)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원가법에 의한 손익계산서(§ 275 Abs. 2 HGB)는 賣出額(Umsatzerlöse)에 당기재고증가분(Bestandmehrungen) 및 其他 自家給付들( andere aktivierte Eigenleistungen)을 가산한 금액에서 當期在庫減少分(Bestandminderungen)을 차감한 全體成果(Gesamtleistung)에 대해서 중요한 비용유형별로 구분한 비용항목들을 대비시키는 형태이다.

賣出原價法에 의한 損益計算書(§ 275 Abs. 3 HGB)는 매출액을

&lt;表Ⅱ-6&gt; 總原價法에 의한 損益計算書

---

|                                  |      |
|----------------------------------|------|
| 1. 매출액                           | (+)  |
| 2. 완제품과 재공품의 재고증감                | (+-) |
| 3. 기타의 차기된 자가급부들                 | (+)  |
| 4. 기타의 영업수익                      | (+)  |
| 5. 재료비                           | (-)  |
| 6. 노무비                           | (-)  |
| 7. 감가상각비                         | (-)  |
| 8. 기타의 영업비용                      | (-)  |
| 9. 투자수익                          | (+)  |
| 10. 기타의 유가증권 및 재무자산대여로<br>부터의 수익 | (+)  |
| 11. 기타의 수입이자 및 이와 유사한 수익         | (+)  |
| 12. 재무자산 및 시장성유가증권의 감가상각         | (-)  |
| 13. 지급이자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  |
| 14. 정상영업손익                       | (=)  |
| 15. 비정상수익                        | (+)  |
| 16. 비정상비용                        | (-)  |
| 17. 비정상손익                        | (=)  |
| 18. 소득세와 수익세                     | (-)  |
| 19. 기타세금                         | (-)  |
| 20. 년차이익/년차손실                    | (=)  |

---

비용발생 분야별(예 : 생산, 판매, 관리 등) 비용항목들과 대비시키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손익계산서 형태와 동일한 것이다. 다음 <表Ⅱ-6>과 <表Ⅱ-7>은 독일의 총원가법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양

식과 매출원가법에 의한 손익계산서 양식이다.

<表Ⅱ-7> 賣出原價法에 의한 損益計算書

|                                  |     |
|----------------------------------|-----|
| 1. 매출액                           | (+) |
| 2. 매출액을 위한 투입의 제조원가              | (-) |
| 3. 매출총이익                         | (=) |
| 4. 판매비                           | (-) |
| 5. 일반관리비                         | (-) |
| 6. 기타의 영업수익                      | (+) |
| 7. 기타의 영업비용                      | (-) |
| 8. 출자지분으로부터의 수익                  | (+) |
| 그 중 관계회사 출자지분 수익                 |     |
| 9. 기타의 유가증권 및 재무자산대여로<br>발생하는 수익 | (+) |
| 그 중 관계회사로부터 발생한 수익               |     |
| 10. 기타 이자수입 및 유사한 수익             | (+) |
| 11. 재무자산 및 시장성유가증권의 감가상각         | (-) |
| 12. 지급이자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 |
| 그 중 관계회사에 대한 것                   |     |
| 13. 경상영업손익                       | (=) |
| 14. 비경상수익                        | (+) |
| 15. 비경상비용                        | (-) |
| 16. 비경상손익                        | (=) |
| 17. 소득세와 수익세                     | (-) |
| 18. 기타세금                         | (-) |
| 19. 년차이익/년차손실                    | (=) |

이 두가지 손익계산서의 형태는 年次決算書を 외부인이 보아서 비교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比較可能性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일 상법은 최소한 몇몇 비용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85 Nr. 8). 예를 들어 매출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註釋에서 구체적인 하부계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원가법에서 § 275 Abs.2 HGB에 따라 재료비와 인건비의 구분이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손익계산서에서도 資本會社의 규모와 관련해 경감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小規模 또는 中規模 資本會社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타 수익, 재고변동 및 중요한 비용항목들을 '總利益(Rohergebnis)'이란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묶어서 표시할 수 있다(§ 276 HGB). 그 이외에도 소규모 및 중규모 자본회사의 경우 § 277 Abs.4 Satz 2 u. 3 HGB에 따라 요구되는 非經常收益(außerordentlichen Erträgen) 및 非經常費用(außerordentlichen Aufwendungen)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바. 註釋

註釋의 목적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하는데 있다. 특정한 계상의무와 관련된 독일 상법 규정들로 인해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정보를 註釋을 통해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며, 기업모습의 實際的 關係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그 형식 때문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註釋의 일반적인 형태는 § 264 Abs.2 Satz 2 HGB에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 의해 법률적 규정을 고려한 年次決算書가 기업모습의

실제적 관계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註釋에서 기재해야 한다.

註釋의 필요한 내용은 부분적으로 상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 284 HGB에 의한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에 대한 說明(Erläuterung der Bilanz und GuV) 및 § 285 HGB에 따른 其他 義務의 記載事項(sonstige Pflichtangaben) 등이 있다. 한편 독일 상법은 개별규정들과 관련해서 법적 형태 및 산업분야별로 특정의 정보기재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공익에 필요한 경우 註釋의 정보가 공시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 286 HGB에 따라 매출액의 내역과 資本會社가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所有持分에 대한 明細는 § 287 HGB에 의해서 작성할 수 있다.

註釋에 대해서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簡易作成이 허용된다(§ 288 HGB). 소규모 資本會社의 경우 중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요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급여의 기재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중규모 資本會社의 경우 資本會社의 활동분야별, 시장별 매출액의 구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註釋에서 기재해야할 내용과 狀態報告書에 기재해야할 내용 사이의 구분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註釋은 資本會社의 年次決算書를 구성하는 반면 狀態報告書는 年次決算書를 구성하지는 못한다. 이들 두가지 보고수단에 대해 감사규정도 서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註釋과 狀態報告書의 내용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 사. 狀態報告書

狀態報告書(Lagebericht)는 연차결산서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연차결산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작성되고 공표될 수 있다. 상태보고서가 연차결산서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석과 그 기능이 유사하지만 상태보고서와 주석이 다루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 주석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개별항목들을 설명하고 보완하는 내용이지만, 상태보고서는 企業經營觀點에서 매년 기업운영을 全般的으로 評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表Ⅱ-8> 狀態報告書の 作성과 内容

| 구 분  | 소규모 자본회사                                                                                                              | 중규모 자본회사           | 대규모 자본회사           |
|------|-----------------------------------------------------------------------------------------------------------------------|--------------------|--------------------|
| 작성의무 | 없음                                                                                                                    | 있음                 | 있음                 |
| 작성기한 | -                                                                                                                     | 회계연도 종료후<br>3개월 이내 | 회계연도 종료후<br>3개월 이내 |
| 공시여부 | -                                                                                                                     | 공시함                | 공시함                |
| 내 용  | 사업의 발전 상황과 상태를 제시해야 함. 특히 다음 사항 기재<br>- 사업년도 종료후에 발생한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br>- 회사의 발전 전망<br>- 연구개발(R&D) 분야<br>- 현재 존재하는 지점 현황 |                    |                    |

구체적으로 事業의 經過內容과 向後展望 및 企業의 狀態가 기술된다. 상법 제289조 제1항에서 보면 “實際的 關係에 상응하는 기업의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최소한 자본회사의 事業經過와 狀態가記

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법은 또한 사업년도 종료후에 발생한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 자본회사의 발전 전망,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태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表II-8>과 같다.

### 3. 콘체른 決算會計

#### 가. 콘체른 決算書의 目的과 法律的 根據

콘체른 決算書(Konzernabschluß; Group accounts, consolidated statements)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콘체른의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의 모습과 일치하는 실제적 관계들을 전달하는데 있다. 독일 상법은 콘체른(Konzern)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콘체른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對象 企業의 要件과 範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정리해 볼 때 독일에서 콘체른은 資本的 支配關係와 實質的 支配關係를 통해 母會社/子會社 關係가 성립하는 企業集團이라고 볼 수 있다.

콘체른 決算書의 情報機能은 個別年次決算書의 정보기능과 동일하지만 個別年次決算書가 갖고 있는 다른 기능들(이익사용의 근거 또는 세법상 소득 및 이익결정 등의 기능)은 충족되지 않는다. 콘체른 決算書는 따라서 연결되는 기업들의 個別年次決算書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큰 규모의 경제적 단일체인 콘체른의 특별 年次決算書로서 個別年次決算書와 함께 활용된다. 그 이유는 個別年次決算書가 일반적으로 콘체른의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에 대해 충분히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콘체른 決算書에는 콘체른 貸借對照表, 콘체른 損益計算書 및 콘체른 註釋 등의 구성요소들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보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콘체른 決算書의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콘체른 決算書を 보완해서 사업의 진전 및 콘체른의 상황에 대해 보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콘체른 狀態報告書가 작성된다.

콘체른 決算書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독일 상법 §§ 290-314에 있다. 이들 독일 상법의 규정들은 유럽공동체 제7차 회계지침이 1985년 12월 19일 “EC회계지침 변환법(Bilanzrichtliniengesetz (BRG))”을 통해 독일 국내법으로 변환되면서 제정된 것이다. 독일 상법상의 이 규정들은 199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어 왔다.

#### 나. 콘체른 決算書 作成範圍

##### (1) 콘체른 決算書 作成義務와 連結範圍

독일 상법에 따라 콘체른 決算書의 작성의무는 資本會社의 법적 형태를 띠고 있는 모회사에 있다. 인적회사 등 다른 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는 企業公示法(PublG) §§ 11, 12에 따라 의무가 있는 기업만 작성하면 된다. 콘체른 결산서는 1990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독일 상법에 따른 콘체른 결산서 작성 의무(§ 290)는 “統一的 經營管理의 概念(Konzept der einheitlichen Leitung)” 또는 “統制概念(Control Konzept)”에 따라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성립하면 발생한다. 공시법에서는 통일적 경영관리의 개념에 따라서만 작성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콘체른내에서 하나의 기업이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른 기업의 통일적 경영관리를 받는 경우 통일적 경영관리 개념에 따라 콘체른 決算書を 작성해야 한다.

통제개념에 따라 콘체른 決算書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이다.

- 母會社가 議決權의 過半數를 보유하는 경우.
- 母會社가 관리기관, 경영기관 또는 감사기관의 構成員 中 過半數를 任命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會社의 社員인 경우.
- 母會社가 子會社와 支配契約를 체결하거나 자회사의 定款上 規程을 통해 支配的 影響力(beherrschenden Einfluß)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모회사이자 동시에 자회사인 기업은 상위단계에서 콘체른 決算書를 작성할 경우 콘체른 決算書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요구는 면제된 콘체른 決算書를 작성해야하는 모회사가 소재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유럽공동체내외)에 따라 다르다.

## (2) 規模에 따른 콘체른 決算書 作成義務

특정의 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 모회사는 콘체른 決算書를 작성할 의무에서 면제된다. 독일 상법 § 293에 따른 세가지 규모 구분기준(총자산, 매출액 및 근로자수)중 2가지에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콘체른 決算書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總資産과 賣出額의 기준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기준 모두를 충족시켜야 작성하게 된다. 하나는 모회사와 연결대상 기업들의 連結前 決算書를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連結했을 경우의 콘체른 決算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종업원의 경우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500명이 넘어야 한다. 콘체른 決算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정리하면 <表Ⅱ-9>와 같다.

&lt;表Ⅱ-9&gt; 콘체른 決算書 作成對象

| 구 분                                             | 구분요건(3가지중 2가지<br>충족, 단위 1,000,000 DM)             | 콘체른 결산서 작성                            |
|-------------------------------------------------|---------------------------------------------------|---------------------------------------|
| 연결하지 않은<br>상태에서<br>모회사와<br>연결대상 기업의<br>연차결산서 합산 | 자산총액 > 63.72<br>연간매출액 > 106.2<br>연간평균종업원수 > 500 명 | 이 두가지 요건에 모두<br>해당되어야 콘체른<br>결산서를 작성함 |
| 연결할 경우의<br>규모                                   | 자산총액 > 53.1<br>연간매출액 > 106.2<br>연간평균종업원수 > 500 명  |                                       |

한편 金融機關과 保險會社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연결대상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작성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결대상기업이 상장된 경우 콘체른 決算書を 작성해야 한다.

### (3) 連結對象에 對한 例外

콘체른 決算書에는 모회사와 해외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자회사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連結에 關한 選擇權(Konsolidierungswahlrechten; § 296)과 連結禁止(Konsolidierungsverbot; § 295)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연결에 관한 선택권은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의 경우 의미가 있다.

연결에 관한 선택권이 적용되는 자회사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모회사의 권리행사가 상당히 그리고 장기간 제한된 경우.
- 필요한 정보작성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이거나 정보작성에 시간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
- 출자지분을 단지 추후의 매각을 위해서만 보유하는 경우.
-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의 모습에 상응하는 실제적 관계의 전달에서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등이다.

#### 다. 連結原則

콘체른 決算書의 目的에 따라 經濟的 單一體로서 콘체른의 資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個別年次決算書에서 二重記帳된 내용들을 제거하고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간 이루어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除去하는 방식으로 콘체른 決算書는 작성된다. 따라서 個別企業들의 年次決算書의 단순합계를 다음의 연결처리를 통해 콘체른 決算書가 작성된다.

-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출자지분은 그에 해당하는 자기자본과 상계시킨다(資本連結).
- 자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기타 사원들의 소수출자지분은 콘체른 決算書에서 조정계정으로 처리한다(少數出資持分을 表示한 全部連結).
-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간 채권과 부채를 상계시킨다(負債連結).
-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간 거래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정산 또는 타당하게 구분한다(收益과 費用의 連結).

-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간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제거한다(中間利益除去).

콘체른에서 벗어남으로써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합계금액이 수정되며, 單一體理論에 따라 連結解體가 이루어진다. 콘체른 決算書는 모회사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작성일은 연결대상 기업들중 가장 중요한 기업의 결산일 또는 연결대상 자회사들중 과반수 이상이 사용하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결산일이 콘체른 決算書의 작성일과 다르며 해당기업의 결산일이 콘체른 決算書 작성일 보다 3개월 이상이 앞선 경우, 연결은 中間年次決算書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기업의 결산일이 콘체른 決算書 작성일보다 3개월 이내로 中間年次決算書가 자발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기업의 결산일과 콘체른 決算書의 작성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가 해당기업의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에 대해 중요한 差異를 가져오면 이를 콘체른 貸借對照表 및 콘체른 損益計算書에서 반영하거나 콘체른 狀態報告書에 반영한다.

## 라. 콘체른 貸借對照表

### (1) 原則

콘체른 貸借對照表에는 연결대상기업의 資産, 負債, 移延計定, 特別計定 및 連結의 목적상 상사대차대조표에서 허용된 회계처리보조 계정 등이 총액으로 기재되어야 한다(總額連結原則). 連結利益 또는 中間利益의 除去와 관련된 계정들은 總額連結의 예외가 된다. 연결

대상기업의 지분중 모회사 또는 다른 연결대상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에 대한 그 지분의 금액을 조정 계정의 형태로 상응하는 표시와 함께 자본계정에 표시한다(少數持分表示 總額連結原則).

總額連結原則과 달리 共同企業(Gemeinschaftsunternehmen)에 대해서는 比率連結(Quotenkonsolidierung)이 허용되고 持分法(Equity Methode)에 따라 관계기업의 지분을 평가할 수도 있다. 共同企業이라 함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용어로 운영에 있어서 지분의 비율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 이러한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 310에 따라 비율연결을 실시할 수 있다. 비율연결이란 자본금에 대한 지분에 비례하여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持分法은 출자지분계정에서 일괄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의결권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 (2) 計定區分

콘체른 決算書에서는 대규모 資本會社의 個別年次決算書에 대해서 적용되는 計定區分이 그대로 적용된다. 콘체른 決算書에 대한 규정들은 個別年次決算書와 달리 단순화(예를 들어 하나의 계정에 모든 재고자산을 포함하는 것)를 위한 규정들이 있고, 연결과 관련된 기술적인 계정과목의 추가를 위한 규정들이 있다. 콘체른이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라고 가정했을때 사실관계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個別年次決算書의 계정과목들을 변경하여 콘체른 決算書에서 표시할 수도 있다.

## (3) 記帳

資本會社에 대해서 적용되는 계정인식(계상)과 관련된 원칙들에 따라 貸借對照表項目으로의 認識義務가 있는 경우 資産, 負債 및 移延計定 등은 個別企業들의 年次決算書에서 처리된 내용에 관계없이 전부 인식되어야 한다. 모회사에서 적용된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항목으로 인식하는데 있어 선택권이 있는 경우 이것은 콘체른 決算書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때 선택권은 個別年次決算書에서 선택권의 행사여부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다.

#### (4) 評價 및 外貨換算

대차대조표 항목으로의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차대조표 항목의 평가에서도 개별 年次決算書의 基準性原則(評價의 統一性 原則)이 콘체른 決算書에서도 적용된다.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 308)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해외자회사의 個別年次決算書의 연결에서는 현지 화폐단위의 표시를 독일 마르크로 환산하는 문제가 있다(年次決算書의 換算). 어떠한 원칙에 따라 외화를 환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선택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콘체른 決算書註釋에 기재해야 한다.

#### (5) 中間利益의 除去

單一體理論의 觀點에서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중간이익)은 그 거래가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비로서 이익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손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상법은 이러한 中間損益의 除去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조건들하에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中間利益은 콘체른 取得原價 또는 콘체른 製造原價

(Konzernanschaffungskosten oder Konzernherstellungskosten)로의 평가를 통해 제거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들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중간이익의 除去義務를 규정하고 있다.

- 대상이 있어야 한다(유형의 재화 및 권리 등).
- 대상은 콘체른 決算書의 작성일 현재 콘체른 決算書에 포함되는 기업들에서 회계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대상은 콘체른 決算書에 포함되는 다른 기업들에서 전부 또는 일부분 거래로서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연결대상 기업들간 이루어진 거래가 통상적인 시장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콘체른 제조원가 또는 콘체른 취득원가의 결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와 중간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이익의 제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 (6) 資本連結

個別年次決算書에서 계상된, 연결대상이 되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대신에 콘체른 決算書에서는 자회사의 자산, 부채 등이 계상된다. 자회사의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회사의 자본금의 해당금액과 상계된다.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원인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7) 負債連結

負債의 連結은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간 債權과 債務의 精算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채권과 채무의 개념은 회계기술적인 개념이 아니며, 연결대상 기업간 채권채무관계의 의미로 이해되어 예금,

가지급금, 우발채무 등도 포함된다. 정산되는 계정들간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점이 정산의 조건은 아니다. 부채연결을 통해 콘체른의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에 관한 모습에 대한 실제관계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重要性の 原則에 따라 부채연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마. 콘체른 損益計算書

損益計算書の 連結에 있어서도 單一體理論이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콘체른 손익계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제3자와의 거래에 따른 비용과 수익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連結對象이 되는 企業들간 去來에 따른 수익과 비용들은 이들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이었으면 이루어졌을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서로 정산되거나 달리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내부매출액, 기타 수입금액, 비용(콘체른할당비용을 포함함), 이자수입 및 이자비용 등이 주로 제거되어야 할 계정들이다. 매출액의 제거는 그 매출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인도된 재화가 외부로 판매된 경우 제품수취인의 비용으로 상계될 수 있다.
- 콘체른내 한 기업에서 생산된 재화가 콘체른내 다른 기업에서 재고로 있는 경우 재고변동사항으로 계정에 반영해야 한다.
- 생산된 대상의 인도가 고정자산으로 편입된 경우 자가생산으로의 계정을 변경한다.

#### 바. 콘체른 註釋

콘체른 註釋(Konzernanhang)은 콘체른 貸借對照表와 콘체른 損益計算書와 함께 콘체른 決算書を 구성하는 한 구성요소이다. 콘체른 註釋은 個別年次決算書에서 註釋의 기능과 내용에서 상당부분 비슷하다. 다만 콘체른 특유의 사항들이 기재된다. 예를 들어 연결 대상기업의 범위변경, 기존의 콘체른 決算書에 적용되던 연결방법과의 차이, 콘체른 決算書 작성일과 모회사의 결산일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등이다.

#### 사. 콘체른 狀態報告書

독일 상법 제315조에 따르면 콘체른 상태보고서는 콘체른 결산서를 작성하는 母會社가 個別企業 狀態報告書와 마찬가지로의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 4. 年次決算書の 公示

#### 가. 概要

1985년 EC會計指針變換法에 의해 도입된 여러 가지 변화 중의 하나가 年次決算書の 公示에 대한 強化이다. EC會計指針變換法 이전에는 단지 1,527개의 주식회사와 702개의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大規模 企業만이 연차결산서와 상태보고서를 商業登記所에 제출하고 관련된 내용을 聯邦公報에 공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 기업들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상당한 정도로 비공개되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5년 EC회계지침변환법을 통해서 비밀로 취급되던 기업 관련 정보들이 일반 공중에게 공표될 수 있게 되었다.

年次決算書を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年次決算書の 정보 전달기능을 강조하여 독일 상법 제325-329조에서는 資本會社 年次決算書の 공시(Offenlegung)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여기서도 資本會社의 규모에 따라 공시의 형태(§ 325 HGB에 따라 상업등기소에 제출(Einreichung zu einem Register)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연방공보에 공고(Bekanntmachung im Bundesanzeiger)할 것인가 및 公示의 範圍(대차대조표 항목의 구분정도, 손익계산서 항목의 통합정도, §§ 326, 327 HGB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공시하지 않을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

#### 나. 大規模 資本會社의 公示

상법 제325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자본회사의 법률상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들을 연방공보에 공시해야 한다.

- 연차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식)
- 감사의견 첨부
- 상태보고서
- 감사이사회의 검토보고서
-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에 대한 처분 제안서 및 처분에 대한 결의서

대규모 자본회사의 이러한 공시는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회사의 법률상 대리인은 상기의 서류들의 사본을 연방공보에 공시한 내용에 대한 복사본과 함께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상업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본회사가 유

한회사인 경우 상업등기소에 결산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주주명부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株主名簿는 연방공보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상업등기소에서는 누구든지 아무런 비용부담없이 이들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다.

만약 年次決算書와 狀態報告書만이 9개월 내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감사이사회의 검토보고서와 연차이익에 대한 사용과 관련된 제안서 등은 그것이 마련된 후에 바로 제출해야 하며, 연차이익에 대한 처분 결의서는 그러한 결의가 있는 후에 바로 제출되어야 한다.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에 지체없이 제출한다.

#### 다. 中規模 資本會社の 公示

상법 제327조에 따르면 中規模 資本會社는 대규모 자본회사와 동일한 서류들을 동일한 기한내에 상업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연방공보에 이들 서류들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해당 자본회사가 어느 상업등기소에 결산서 등을 제출했으며, 등기번호가 몇 번인지를 연방공보에 공시해야 한다.

한편 중규모 자본회사가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는 貸借對照表에 대해서는 소규모 자본회사에서 허용되는 형태의 略式 貸借對照表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一部 項目에 대해서는 약식 대차대조표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表II-10>은 중규모 자본회사가 상업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 보완되어야 할 항목들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주식의 경우에도 상법 제285조 제2호, 제5호, 제8호a 세항 및 제12호의 내용을 결한 상태에서 상업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表Ⅱ-10> 中規模 資本會社가 提出할 略式 貸借對照表에서 補完될 內容

| 차변항목                                                                                                                                                                                                                                                                                                                                                                                                      |
|-----------------------------------------------------------------------------------------------------------------------------------------------------------------------------------------------------------------------------------------------------------------------------------------------------------------------------------------------------------------------------------------------------------|
| <p>A. 고정자산</p> <p>Ⅰ. 무형자산</p> <p>2. 영업권</p> <p>Ⅱ. 유형자산</p> <p>2. 기계설비</p> <p>3. 기타 설비 및 사업시설</p> <p>4. 유형자산 관련 선급금 및 건축중인 건물</p> <p>Ⅲ. 투자자산</p> <p>1. 관계회사(결합기업범위)에 대한 출자지분</p> <p>2.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p> <p>3. 출자지분(주식 등)</p> <p>4. 출자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p> <p>B. 유동자산</p> <p>Ⅱ. 채권들과 기타자산항목들</p> <p>2. 관계회사 매출채권</p> <p>3. 출자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p> <p>Ⅲ. 유가증권</p> <p>1. 관계회사 출자지분</p> <p>2. 자기회사 출자지분</p> |
| 대변항목                                                                                                                                                                                                                                                                                                                                                                                                      |
| <p>C. 부채</p> <p>1. 사채,<br/>그 중 전환가능한 것</p> <p>2. 금융기관채무</p> <p>6.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p> <p>7. 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채무</p>                                                                                                                                                                                                                                                                                            |

## 라. 小規模 資本會社の 公示

상법 제326조에 의하면 小規模 資本會社の 법률상 대리인은 대차 대조표와 주식만을 회계연도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상업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자본회사의 경우 손익계산서와 상태보고서 및 감사이사회의 검토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속명세서에서도 손익과 관련된 내용은 공시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업등기소의 명칭과 등기번호는 연방공보에 공시되어야 한다. 그 공시는 상업등기소에 대차대조표와 주식을 제출한 이후에 가능한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 마. 公示關聯 其他事項

大規模 人的會社 등의 연차결산서 작성과 회계감사에 적용되는 법률인 기업공시법에 따라 의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대규모 자본회사의 공시에 적용되는 내용에 따라 마찬가지로 공시해야 한다.

한편 콘체른 年次決算書を 작성해야 하는 자본회사의 법률상 대리인은 콘체른 연차결산서를 사원들에게 제출한 이후 바로 회계감사 의견 및 콘체른 상태보고서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내에 연방공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서류들은 연방공보에 공시된 내용의 복사본과 함께 동 자본회사의 해당 상업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에서 열거된 규모별 자본회사에 요구되는 공시요건에 대한 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출되고 공시되는 서류들의 형식과 내용은 상법 제328조에서 통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법인의 연차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감사인 경우에 會計監査意見은 그 全文

이 제출되고 공시되어야 한다.

만약 年次決算書가 신문 등의 媒體에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것과 다른 형태로 公示되거나 再生産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시내용 상단에 해당 공시형태가 법률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의견이 공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무감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지, 한정적의견인지, 의견거부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상업등기소에 법률상 요건에 맞는 연차결산서가 제출되었고 연방공보 몇호에 공시가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야 한다.

상업등기소는 제출된 결산서 등의 서류들이 완전한 것인지 그리고 정해진 경우 연방공보에 공시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와 함께 해당 자본회사의 규모의 구분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업등기소는 賣出額規模와 従業員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시되는 내용과 형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본회사의 법률상 대리인에게는 상법 제33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0,000 마르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업등기소는 연차결산서, 상태보고서 및 콘체른 연차결산서 및 콘체른 상태보고서 및 기타 서류들의 공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상업등기소가 벌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공시와 관련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 때 벌금은 10,000 마르크로 제한된다. 상업등기소가 이러한 벌금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출자자, 채권자 및 근로자대표의 告訴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이 이러한 告訴權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 이러한 고소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유한회사 형태의 많은 小規模 회사들이 공시요건을 잘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III. 獨逸의 會計監査制度

#### 1. 獨逸 會計監査制度의 體系

##### 가. 獨逸 會計監査制度의 概要

제8차 EC회계지침(會計資料 義務監査 受任者の 承認에 關한 1984年 4月 10日の 第8次 指針, 會計監査人指針: Prüferrichtlinie)이 독일 국 내법으로 변환되면서 독일의 資本會社(Kapitalgesellschaften)의 회계 감사에 관한 규정이 통일되게 되었다.

個別企業의 회계감사의무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 제4차 지침이 추가로 적용되며, 콘체른의 회계감사의무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 제7차 지침이 적용되었다. 유럽공동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이 선택 할 경우 소규모 資本會社에 대한 회계감사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독일에서 기업의 회계감사에 대한 규정은 資本會社의 法的 形態 (Rechtsformen)에 대해 독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적 형태의 기업들로 公示義務企業(publizitätspflichtige Unternehmen) 또는 組合(Genossenschaften)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회계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金融機關(Kreditinstitute)과 保險會社(Versicherungsunternehmen)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 지침의 국내법 전환과 함께 그 규모나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회계감사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會計監査人은 공인회계사가 담당한다. 중규모의 資本會社에 대해서는 특별히 準公認會計士(Vereidigter Buchprüfer)가 會計監査人이 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는 대상법인이 반드시 실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주주와 기업의 법률상 대리인(경영자)이 상호합의를 하여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대상 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결산이 확정될 수 없고, 결산이 무효 처리되며, 법적 대리인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 나. 會計監査 對象企業

§ 316에 따를 때 회계감사는 註釋을 포함한 年次決算書와 狀態報告書에 대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독일 資本會社 중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은 그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소규모, 중규모 및 대규모의 구분은 § 267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表Ⅲ-1>과 같다.

<表Ⅲ-1> 會計監査對象 個別 資本會社の 區分

| 구 분    | 구분요건<br>(3가지중 2가지 충족)<br>(단위 10,000 DM)                             | 회계감사의무 여부<br>(주식, 유한,<br>주식합자회사) |
|--------|---------------------------------------------------------------------|----------------------------------|
| 소규모 기업 | 자산총액 ≤ 531<br>연간매출액 ≤ 1,062<br>연간평균종업원수 ≤ 50명                       | 없음                               |
| 중규모 기업 | 531 < 자산총액 ≤ 2,124<br>1,062 < 연간매출액 ≤ 4,248<br>50 < 연간평균종업원수 ≤ 250명 | 있음                               |
| 대규모 기업 | 자산총액 > 2,124<br>연간매출액 > 4,248<br>연간평균종업원수 > 250명                    | 있음                               |

<表Ⅲ-1>에서와 같이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기업은 우선 중규모 및 대규모 資本會社의 법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임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 資本會社의 법적 형태에 해당하는 회사로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및 주식합자회사가 해당된다. 소규모의 기업이라도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資本會社 이외의 다른 법적 형태의 기업들 중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있다. 첫째, 규모가 큰 기업이다. 둘째,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첫 번째 경우와 관련하여 자본회사는 아니지만 企業公示法(Publizitätsgesetz)에서 정해진 다음 세 가지 요건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도 회계감사의무가 있다.

- 자산총액 > 125 백만 DM
- 연간매출액 > 250 백만 DM
- 연간평균종업원수 > 5,000 명

기업공시법은 특정한 법적 형태를 갖는 기업과 콘체른의 회계에 대한 법률이다. 특히 자본회사가 아닌 인적회사의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연차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으며, 공시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콘체른도 위 기준에 따라 연차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상법 제242조 이하에 있는 회계처리규정들이 개별 연차결산서와 콘체른 연차결산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 번째 경우와 관련해서 金融業과 保險業과 같은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별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다. 會計監査對象 콘체른

자본회사인 모회사를 중심으로한 콘체른이 자산, 매출,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콘체른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의무가 결정된다. 다음 <表Ⅲ-2>와 같이 소규모 콘체른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한편 모회사가 자본회사가 아니더라도 앞서 설명한 기업공시법의 기준에 따라 콘체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表Ⅲ-2> 外部會計監査 對象 콘체른

| 구 분        | 구분요건(3가지중 2가지 충족, 단위 1,000,000 DM)              | 외부감사의무<br>(모회사가 주식, 유한, 주식합자회사인 경우) |
|------------|-------------------------------------------------|-------------------------------------|
| 소규모<br>콘체른 | 자산총액 ≤ 53.1<br>연간매출액 ≤ 106.2<br>연간평균종업원수 ≤ 500명 | 외부회계감사의무 없음                         |
| 대규모<br>콘체른 | 자산총액 > 53.1<br>연간매출액 > 106.2<br>연간평균종업원수 > 500명 | 외부회계감사의무 있음                         |

## 2. 會計監査業務의 分擔

### 가. 獨逸의 會計監査業務 分擔

앞서 간단히 설명하였듯이 독일의 경우 회계감사업무는 기본적으로

로 公認會計士(Wirtschaftsprüfer) 또는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법률상 회계감사의무가 있는 개별 기업과 콘체른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법률상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처럼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회계감사를 義務監査(Pflichtprüfung)라 한다. 이러한 의무감사의 경우 반드시 회계감사자는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계감사의무가 있는 중규모 자본회사의 경우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準公認會計士(vereidigter Buchprüfer)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준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회계감사의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법률상 회계감사의무가 없는 소규모 자본회사 또는 인적회사 등도 출자자 또는 채권자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받는 회계감사를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任意監査(freiwillige Prüfung)라고 한다. 이러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준공인회계사도 수행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회계감사업무의 분담과 관련된 과정을 설명하고 공인회계사 제도와 준공인회계사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준공인회계사의 대부분이 세무사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준공인회계사 제도와 세무사 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다.

#### 나. 獨逸의 會計監查 業務分擔 過程

독일에서 公認會計士(Wirtschaftsprüfer: independent public account-

tant) 제도는 1931년에 만들어졌다. 같은 해에 모든 株式會社에 대한 法定 會計監査義務가 처음으로 요구되었다.

그 이전에는 任意監査만 있었으며, 임의적 회계감사는 公認會計監査人(Vereidigte Bücherrevision)과 소위 '信託法人(Treuhandgesellschaften: trust corporations)'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다. 信託法人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신탁법인의 설립에 대표적으로 관여한 것은 銀行이었다. 은행은 주로 채무자의 회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신탁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독일의 많은 회계법인들의 회사이름에 '信託'이란 의미의 'Treu' 또는 'Treuhand'라는 用語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 회계법인들의 연원에 따라 최근까지도 은행들이 중요한 회계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1931년 이후에 정식으로 공인회계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인회계사 직업을 갖거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데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었다.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했고 매우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한편 직업윤리규정 및 행동강령 등도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다.

현재에는 회계감사와 관련된 직업의 수행에 대한 모든 규정들이 公認會計士法(Wirtschaftsprüferordnung/WPO)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은 1975년 및 1985년 대차대조표 改革法案에 의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1985년 개정에서는 회계감사인인 직업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은 기존에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하던 회계감사업무를 분담하는 내용과 공인회계사의 수효를 늘리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公認會計士(Wirtschaftsprüfer)는 모든 회계감사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中規模 資本會社에 대한 義務監査와 법률상 의무적인 회계감사가 필요없는 기업들의 任意監査에 대해서는 準公認會計士(Vereidigter Buchprüfer)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1989년까지 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에 대해 略式 資格試驗을 통해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치를 통해 독일에서 稅務士와 公認會計士間의 會計監査業務의 分擔에 대한 오랜 논쟁도 그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매우 적은 수의 전문적인 공인회계사가 있을 뿐이다. 그만큼 공인회계사가 되는 것도 어렵게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세무사는 그 수효가 많고 영향력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회계감사업무를 두고 두 직업간 갈등이 있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자신들의 전문영역임을 주장하였고, 세무사는 적은 수의 공인회계사만으로는 모든 기업들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일부 회계감사 업무에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쟁이 위 措置들을 통해 終熄되었던 것이다.

198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사나 변호사는 일정한 약식 시험을 통해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었다. 이 조치들을 통해 1989년까지 상당수의 세무사가 공인회계사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중규모 자본회사에 대한 의무감사와 모든 임의감사에 대해 준공인회계사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도 實質的으로 會計監査業務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뒤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세무사는 어렵지 않은 略式試驗을 통해 준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준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있던 회계사들에 대한 제도로 한때 폐지

되었다가, 정부가 다시 부활시켜 이를 활용하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간의 업무분쟁을 해결하였던 것이다.

#### 다. 獨逸의 公認會計士 制度

독일에서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자격시험과 달리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상당 기간 實務에 從事한 자만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법학 또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최소한 5년의 경영실무에 종사해야 한다. 이때 경영실무 기간 중 최소 4년은 會計監査實務에 종사해야 한다. 응시자가 최소 10년이상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한 경우 대학졸업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試驗委員會는 정부관리가 위원장을 맡고, 세무행정당국의 관리, 대학교수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시험내용은 회계학, 회계감사, 경영학, 경제학, 상법, 경제법 및 세법이다. 시험은 7가지의 논술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구성된다. 세무사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중 세법에 대한 논술 및 구두시험을 면제하는 약식 시험이 가능하다. 準公認會計士(Vereidigter Buchprüfer)에 대해서는 세무사이면서 준공인회계사인 경우 시험과목중 세법, 경영학, 경제학에 대한 논술 및 구두시험을 면제하고, 변호사이면서 준공인회계사인 경우 회계사 시험과목중 경제법, 경영학, 경제학에 대한 논술 및 구두시험을 면제하는 약식시험이 가능하다.

독일에서 공인회계사는 개인적으로, 또는 합명회사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자본회사 형태의 會計法人을 통한 회계감사가 보편적이다. 실제로 독일의 대규모 회계법인들은 인

적회사 형태보다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 자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본회사 형태의 회계법인은 長期的인 法人名稱을 갖게 되고 경영상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자본회사 형태의 각각의 회계법인에 대해 업무의 질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해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

첫째, 無限責任社員 또는 이사의 50% 이상이 公認會計士이어야 한다. 둘째, 出資者 또는 社員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및 준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셋째, 자본회사 형태의 會計法人의 경우 의결권 있는 출자자 또는 주주의 과반수가 공인회계사이거나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사원 또는 경영진의 소수는 세무사, 준공인회계사 또는 외국 공인회계사와 같이 독일법과 유사한 법적 요건에 의해 본국에서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은 1985년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회계법인의 지분참여자와 관련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전문가가 아닌 은행 또는 정부기관 등이 상당히 많은 대규모 회계법인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所有構造의 變更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987년 이후부터는 지분의 이전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인회계사 직업은 公認會計士會(Wirtschaftsprüferkammer)가 감독한다. 공인회계사회는 공공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 연방경제부의 감독을 받는다. 모든 공인회계사, 준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그리고 회계법인의 경영진(공인회계사 또는 준공인회계사가 아닌 자)은 반드시 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인 직업수행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공인회계사의 직업을 감독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연방공보에 게재되는 모든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분류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른 법률상 위반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다.

한편 공인회계사회와 달리 자발적 회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 형태의 公認會計士協會(Institut der Wirtschaftsprüfer in Deutschland e.V.)도 있다. 대부분의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회원이다. 공인회계사협회는 공동의 이해증진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으며, 회계원칙 및 회계감사기준 등의 발전과 전문적 지식의 공유와 회원의 교육 등이 목적이다. 공인회계사협회는 常任專門委員會(Hauptfachausschuß)와 특별분과위원회가 있어 회계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하고, 會計監査實務基準, 會計報告基準, 監査意見基準 등을 제정하고 있다.

#### 라. 獨逸의 稅務士 制度

독일은 세무자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직업으로 稅務士(Steuerberater) 제도를 두고 있으며, 세무사법이 세무사 직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稅務諮問業務의 수행은 연방조세관청 및 주정부 조세관청이 관할하는 조세, 기타 각종 조세에 대한 세무자문 업무와 獨占(화주전매가 있음)과 관련된 업무, 기타 조세행정과 관련된 자문을 의미한다. 세무자문의 내용으로는 조세법 위반에 따른 조세처벌사건 및 벌금사건에 대한 자문,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장부의 기장, 결산에 대한 자문 및 조세환급청구 등의 실행과 관련된 자문 등이다.

세무자문업무는 稅務士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세무사법은 無制限的으로 稅務諮問을 할 수 있는 경우와 制限的인 稅務諮問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무제한적 세무자문 자격이 있는 경우는 세무사, 세무법인, 변호사, 회

계사, 회계법인, 준회계사, 준회계법인 등이다. 반면 제한적 세무자문 자격은 법무사, 변리사, 공공기관, 재산관리인(재산관련조세) 등에게 주어진다. 한편 勤勞所得稅 相談組合(Lohnsteuerhilfverein)도 제한된 범위에서 세무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동 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세 관련 세무 상담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근로소득세 상담 이외에 관련된 소득세 상담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稅務士가 遂行하는 業務는 위탁에 의해 위탁자에게 세무자문을 수행, 위탁자의 대리(조세소송 포함), 위탁자의 세무관련 업무의 수행, 위탁자의 납세의무 이행시 자문을 수행, 세법상 기장의무의 이행시 자문을 수행, 특히 세무상 대차대조표 작성 및 세무상 대차대조표에 대한 세법상의 평가 및 조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조세처벌 관련 자문의 수행 등이다.

稅務士 資格은 법률에 의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다른 요건에 의해 시험이 면제되고 취득할 수 있다. 세무사 시험은 2번 다시 볼 수 있다. 즉 총 3회에 걸쳐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 독일내 대학에서 경영 및 경제 분야 8학기 이상 수학한 자 또는 독일내 대학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자로 3년이상 세무관청에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둘째, 독일내 대학에서 경영 및 경제 분야 졸업자로 졸업후 4년 이상 세무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셋째, 세무자문, 경영자문 및 관련 직업교육의 이수자로 직업교육 졸업시험 합격후 10년 이상 세무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넷째, 7년이상 세무관청 및 다른 정부관청에서 세무업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시험은 3개의 필기(논술)시험 및 구두시험으로 구성되며, 조세관련 각 연방주의 최고관청에서 구성한 시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논술시험의 내용은 조세절차법, 소득 및 수익에 대한 조세, 평가법과 단일평가규정과 관련된 조세들, 소비세 및 거래세, 관세 및 독점의 기본원리, 민법 및 경제법 원리, 경영학 및 회계학, 경제학 그리고 세무사직업법규이다. 세무사 시험은 독일 연방의 각 지역별로 따로 실시된다. 관할지역 신청자가 신청당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각 연방주의 시험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험을 보아야 한다.

공인회계사 및 준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민법 및 경제법과 경영학 및 회계학에 대해 그 시험을 면제한다. 한편 독일내 대학에서 조세관련 분야에 10년이상 재직한 교수, 조세법원 판사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고급공무원으로 조세관련 행정분야에 과단위 이상 행정책임자로서 10년이상 재직한 자 그리고 일반공무원으로 조세관련 행정분야에 15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 시험을 면제한다.

稅務法人(Steuerberatungsgesellschaften)의 형태로 세무자문을 수행할 수도 있다. 세무법인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회 임원, 대표자 또는 인적 책임사원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세무사 이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준공인회계사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세무사 직업의 업무수행 및 의무수행여부에 대한 감독, 회원간 분쟁의 조정 및 회원과 위탁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稅務士會가 구성되어 있다. 세무사회는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수준에서는 聯邦稅務士會가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별 세무사회는 해당 지역의 세무관청이 감독하고 연방세무사회는 연방재무성이 감독한다.

독일 세무사 제도의 특징은 세무사의 업무가 稅務諮問業務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회계감사업무와 조세소송 대리업무 등 상당히 包括的이라는 것에 있다. 회계감사업무의 경우 명시적으로 세무사 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稅務士는 다음에 설명하는 것과 같은 어렵지 않은 약식 시험을 통해 準公認會計士가 될 수 있으며, 준공인회계사가 되면 중규모 자본회사의 의무감사와 모든 임의감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마. 獨逸의 準公認會計士 制度

독일에서 준공인회계사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중간에 위치한 자격제도라고 볼 수 있다. 원래는 ‘公的으로 宣誓를 한(vereidigte)’ ‘會計監査者(Buchprüfer)’라는 직업으로 공인회계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있던 회계감사인 직업을 일컫는 것이었다.

준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그 자격증이 부여된다. 준공인회계사 또는 준회계법인이 정식 공인회계사가 되거나 정식 회계법인이 되면 준공인회계사 및 준회계법인의 면허는 취소된다.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準公認會計士의 業務內容은 기업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기장, 회계처리 및 대차대조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준공인회계사는 모든 자본회사에 대한 의무 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으며, 다만 중규모의 자본회사인 유한회사에 대한 義務監査만을 실시할 수 있다. 반면 법률상의 의무감사가 아닌 모든 임의감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권이 있다. 준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업무 이외에 세무업무 및 경영자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준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회계사법의 규정들이 그대로 준용된다.

준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試驗에 합격해야 한다. 준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응시자는 응시일 현재 稅務士 및 辯護士로서 5년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그중 최소 3년 이상의 기간동안 會計監査와 관련된 業務를 수행했어야 한다. 1989년 이전에 시험에 응시한 세무사나 변호사에게는 이러한 실무수행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시험은 논술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구성된다. 시험과목과 시험위원회의 구성은 공인회계사 시험과 유사하다. 시험과목은 회계감사(유한회사의 결산서 감사), 경영학, 경제법(주로 유한회사법) 및 준회계사직업법규 등이다. 그러나 이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다. 따라서 세무사들은 준공인회계사가 쉽게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제131c조에 의해 세무사, 변호사 등에 대해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한시적인 신청을 받아 특별 전형을 실시하여 회계사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당시 이러한 공인회계사 특별응시요건은 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로 각각 5년 이상 종사하기만 하면 되었다.

### 3. 個別企業 會計監査

#### 가. 會計監査義務

기업에 의해서 작성되는 年次決算書와 狀態報告書는 會計監査人에 의해 감사받아야 한다. 이러한 회계감사의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의 법적 형태, 규모, 산업분야 등과 관련이 있다. 주식

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가 회계감사의무가 있으며, 協同組合 (Genossenschaften)도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 267 HGB에 따른 소규모 資本會社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회사가 아니더라도 공시법(Publizitätsgesetz; PublG) 제6조 제1항(§ 6 Abs.1 PublG)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독일 상법 제240조에 따른 金融機關 (§ 240k HGB)과 保險監督法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VAG) 제55조에 따른 保險機關 (§ 55 VAG), 共同住宅企業 (gemeinnützige Wohnungsunternehmen), 建築貯蓄銀行 (Bausparkasse) 제1조 제1항 및 제13조 BauSpKG 및 독일 상법 제240k조, KAGG 제2조 제1항 제24a조 제4항 및 독일 상법 제240k조에 따른 投資會社 (Kapitalanlagegesellschaften) 등도 회계감사의무가 있다.

公共企業 (Wirtschaftsbetriebe der öffentlichen Hand), 獨逸聯邦銀行 (Deutsche Bundesbank), 獨逸再建銀行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獨逸決濟銀行 (Deutsche Ausgleichbank) 등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률상 회계감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年次決算書가 確定될 수 있다 (§ 316 Abs. 1 Satz 2 HGB).

회계감사의무가 없는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회계감사는 임의감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발적 회계감사는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다.

회계감사의 대상은 年次決算書 (Jahresabschluß)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및 註釋이 포함되는 경우 이것까지), 年次決算書의 기본이 되는 회계처리 (Buchführung) 그리고 제한적 범위이긴 하지만 狀態

報告書(Lagebericht) 등이다. 회계감사에서는 회계처리와 관련된 법규규정과 이를 보완하는 회사정관의 규정들이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시된다(統制機能; Kontrollfunktion, § 317 Abs. 1 HGB). 따라서 회계감사는 법률 및 관련규정에 대한 適合性 監査(Gesetz- und Ordnungsmäßigkeitsprüfung)라고도 부른다.

狀態報告書의 경우 이것이 年次決算書와 내용면에서 일관성이 있는지를 감사하고, 狀態報告書의 기타 다른 내용들이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年次決算書를 확정하는 회사기관이 年次決算書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會計監査人은 회계감사보고서에서 회계처리, 年次決算書, 狀態報告書 등이 법률규정에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정해야 한다(情報機能; Informationsfunktion; 독일주식법 제170조 이하, 유한회사법 제42a조 제1항).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3자에게 종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監査意見(Bestätigungsvermerk)을 제시해야 한다(確認機能; Beglaubigungsfunktion, § 322 HGB).

#### 나. 會計監査人の 選任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의무가 있는 경우 會計監査人으로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선정된다(§ 319 HGB). 公認會計士(Wirtschaftsprüfer) 또는 회계법인(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이 會計監査人이 될 수 있다. 앞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유한회사(§ 267 Abs. 2)의 年次決算書와 狀態報告書에 대해서는 準公認會計士(vereidigter Buchprüfer) 또는 準會計法人(Buchprüfungsgesellschaften)이 會計監査人이 될 수 있다.

會計監査人은 각각의 회계감사마다 새로이 선임된다. 일반적으로 § 318 HGB에 따라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Haupt-/Gesellschafter-versammlung)를 통해 선출된다. 保險業體의 경우 監査理事會를 통해 결정된다(§ 58 보험감독법).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해 會計監査人의 독립성이 의심될 수 있는 특정한 상황들에서는 會計監査人이 될 수 없다.(§ 319 Abs. 2 und Abs. 3 HGB) 공인회계사 및 준공인회계사 또는 그들과 함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會計監査人이 될 수 없다.

- 감사대상 資本會社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현재 또는 會計監査人 선임이전 최근 3년 동안 감사대상 資本會社의 법적인 대리인이거나 감사이사회의 구성원이거나 피고용인(Arbeitnehmer)인 경우
- 어느 법인(juristische Person)의 법률상 대리인 또는 감사이사회의 구성원인 경우, 어느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의 사원인 경우 또는 어느 개인기업(Unternehmen)의 소유자(Inhaber)인 경우로, 이들 법인, 인적회사 및 개인기업이 감사대상 資本會社와 연결되어(verbunden) 있거나 이들에 의해 감사대상 資本會社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 어느 기업의 피고용인으로, 그 기업이 감사대상 資本會社와 연결되어 있거나 감사대상 資本會社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자연인(natürliche Person)의 피고용인으로 그 자연인이 감사대상 資本會社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 資本會社의 회계처리(Führung der Bücher)를 하거나 감사대상 年次決算書를 작성하면서 회계감사활동(Prüfungstätigkeiten)이

외에 다른 활동을 조력(mitwirken)하는 경우

- 자연인 또는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 고용인, 감사이사회의 구성원 및 사원이거나 또는 개인기업의 소유자로, 해당 자연인, 법인, 인적회사, 개인기업이 Nr. 5에 따라 감사대상 資本會社の 會計監査人이 될 수 없는 경우
- Nr. 1에서 Nr. 6까지의 규정에 따라 會計監査人이 될 수 없는 자를 감사과정에서 고용한 경우
- 과거 5년 동안 會計監査人の 전체수입의 50% 이상이 감사대상 資本會社에 대한 회계감사와 경영자문(Beratung) 활동과 및 감사대상 資本會社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통해 획득되었고, 당해 사업년도(laufendes Geschäftsjahr)에도 이것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만 과중한 경제적 피해(Härtefälle)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회(Wirtschaftsprüferkammer)가 시한부(befristet)로 예외허가(Ausnahmegenehmigungen)를 할 수 있다.

偏見된 會計監査에 대한 餘地(Besorgnis der Befangenheit)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위탁을 받을 수 없다(§ 49 WPO). 동일한 회계감사인의 再選任은 허용되며 실무상 재선임은 일반적이다.

위임된 會計監査 委託契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철회되거나 파기될 수 있다(§ 318 Abs.1 Satz 5, Abs. 6 HGB). 회사의 법률상 대리인 및 감사이사회(Aufsichtsrat)의 신청이 있거나, 주식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의 경우 관련 사원(Gesellschafter)들의 합산된 지분(Anteile)이 회사자본금(Grundkapital)의 1/10이거나 합산된 주식의 액면가액(Nennbetrag)이 2백만 마르크 이상이며, 이들 사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法院은 관련자와 기존

에 선임된 會計監査人의 증언을 들은 후 동 會計監査人의 개인적인 이유(ein in der Person liegenden Grund)로, 특히 편견된 회계감사에 대한 여지(Besorgnis der Befangenheit)가 있어, 다른 會計監査人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를 명령할 수 있다.

이 신청은 會計監査人 선임일 이후 2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會計監査人 선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한 株主들(Aktionäre)만이 會計監査人 교체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체신청을 한 주주는 會計監査人 선임과 관련된 株主總會日(Tag der Hauptversammlung) 이전 최소 3개월 동안 주식(Aktien)의 보유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會計監査人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법률상 대리인, 감사이사회 또는 사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會計監査人을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會計監査人이 회계감사계약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회계감사를 적기에 마치는 것에 방해되며 다른 會計監査人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계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회계감사의 실행과정에서 會計監査人은 자신의 종업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소위 회계감사보조인(Gehilfen)). 이들 회계감사보조인들은 會計監査人의 감독과 지시를 받으며, 그들도 비밀준수의무가 있다(§ 323 Abs. 1 HGB, § 43 Abs. 1, § 50 WPO).

## 다. 會計監査의 內容

### (1) 計定內容의 確認을 위한 監査

자산계정항목들과 부채계정항목들은 매년 實際調査(Inventar)를 통해 확인하고(§ 240 HGB), 이를 年次決算書에 반영한다(§ 246 Abs.

1 HGB). 會計監査人은 年次決算書에 반영된 내용이 완전하고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실제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標本抽出을 통해서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형태로 검토해야 한다. 계정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의무, 금지 및 선택권 (§§ 246 - 251 HGB)이 제대로 행사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 (2) 評價에 對한 監査

§§ 252-256 HGB까지의 평가에 관한 일반원칙들과 資本會社の 경우 §§ 279-283 HGB까지의 評價規程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가상각의 적정성, 충당금과 연금 충당금의 적정성, 취득가액 및 제조원가의 정확성, 평가의 통일성, 개별평가원칙의 준수, 부등원칙의 적용, 저가주의 원칙의 적용, 계속기업원칙의 적용, 실현주의 원칙의 적용, 보수주의 원칙의 적용 (고정자산, 유동자산, 부채 등에 대한 것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규정의 적용 (§§ 340e-340g HGB) 등에 대한 것이다.

#### (3) 計定區分の 監査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구분과 관련된 규정들 (§§ 265-278 HGB)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특별한 계정형식이 있는 경우 (§§ 330 HGB, 특히 금융기관 및 보험기업 등에 대한 것임)에는 이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감사한다.

#### (4) 註釋의 監査

註釋은 資本會社와 협동조합의 年次決算書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식으

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註釋은 정보의 공시가 금지(§ 286 HGB)되거나 회사의 규모에 의해 註釋에 포함될 정보에 대한 경감이 있는 경우(§ 288 HGB)가 아니고서는 §§ 284, 285 HGB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

#### (5) 狀態報告書の 監査

狀態報告書(§ 289 HGB)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감사를 받는다. 제한적 범위라함은 狀態報告書가 年次決算書와 내용상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와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317 Abs. 1 HGB).

#### (6) 會計處理의 監査

회계처리의 규정준수(Ordnungsmäßigkeit der Buchführung) 여부에 대한 확정(Feststellung)은 일반적인 회계감사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계처리의 규정준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규정준수, 시의적절한 기장여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보관, 전산자료비치 여부 등이다.

#### (7) 實際的 事實關係監査

年次決算書는 단순히 분명하고 체계적이어야(§ 243 Abs.2 HGB) 할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의무가 있는 모든 경우에 적절한 회계처리 원칙을 고려하여 기업의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 모습의 실제적 관계를 전달(§ 264 Abs.2 HGB)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會計監査人은 개별조항들을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실제적 사실관계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사의견에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라. 會計監査人の 權利

年次決算書 회계감사와 관련해 會計監査人は 광범위한 자료열람권, 자료요구권 및 감사권을 갖는다. 資本會社の 법률상 대리인은 年次決算書와 狀態報告書を 작성(Aufstellung)하고 나서 즉시 이를 會計監査人에게 제출해야 한다. 資本會社の 법률상 대리인은 會計監査人이 資本會社の 장부(Bücher)와 서류(Schriften) 및 자산(Vermögensgegenstände), 부채(Schulden), 금고(Kasse), 상품 및 유가증권 보유현황(Bestände an Wertpapieren und Waren)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gestatten)해야 한다.

주의깊은 감사(sorgfältige)가 필요한 경우 會計監査人は 법률상 대리인에게 모든 說明과 立證(alte Aufklärungen und Nachweise)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감사의 事前準備(Vorbereitung)가 필요한 경우 會計監査人は 앞서 언급한 권리를 年次決算書の 작성이전에도 갖을 수 있다. 주의깊은 감사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정보요구 및 열람권은 부분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320 HGB).

### 마. 會計監査意見

年次決算書 회계감사의 결과는 형식적으로는 監査意見を 통해 要約된다(§ 322 HGB). 회계감사의 최종결과가 나온 다음에(nach dem abschließenden Ergebnis der Prüfung) 다른 이의가 없는(keine Einwendung) 경우 會計監査人は 年次決算書에 대해 다음의 감사의 견을 표명한다: “본인/우리의 의무에 따른 회계감사(pflichtgemäße Prüfung)의 결과에 따르면 회계처리와 年次決算書는 법률규정에 일치하고 있다. 年次決算書는 正規簿記의 原則(Grundsätze ordnung-

smäßiger Buchführung)을 고려하여 資本會社の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의 모습(Bild)에 관한 實際的 內容(tatsächliche Verhältnisse)을 전달하고(vermittelt) 있다. 狀態報告書는 年次決算書와 내용상 조화를 이루고 있다(steht im Einklang)."

중요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會計監査人은 감사의견을 한정하거나(einschränken) 拒否할(versagen) 수 있다. 監査拒否(Versagung)는 年次決算書나 consolidated 決算書에 대한 意見(Vermerk)을 통해서 선언할 수 있다. 限定意見(Einschränkung)이나 의견거부의 이유는 설명되어야 한다. 한정 의견이 제시된 경우 한정 의견의 影響範圍(Tragweite)에 대해 분명하게 認知할(erkennbar)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바. 其他事項

年次決算書, 狀態報告書에 대한 법률규정 및 정관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Auslegung und Anwendung)에서 會計監査人과 감사를 받는 資本會社간 의견차이(Meinungsverschiedenheiten)가 있을 경우 會計監査人 또는 資本會社の 법률상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신속하게 法院(Landgericht)이 이를 판결할(entscheiden) 수 있다. 법원이 판결하면서 허용한 경우 판결에 대해서 바로 不服(Beschwerde)할 수 있다. 불복은 이를 통하여 근본적 의미의 법률문제(Rechtsfrage von grundsätzlicher Bedeutung)의 해결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불복에 대해서는 州上級法院(Oberlandgericht)이 판결한다(§ 324 HGB). 그러나 실무에서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일반적이다.

會計監査人, 그의 補助者(Gehilfen) 및 회계감사법인의 법률상 대

리인으로 회계감사에서 협력하는(mitwirkend) 자는 성실하고(gewissenhaft) 공정한(unparteiisch) 감사를 실행하고 비밀을 준수(Verschwiegenheit)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회계감사활동을 통해 알게된 事業秘密과 經營秘密(Geschäfts- und Betriebsgeheimnisse)을 허가 없이(unbefugt) 이용할 수 없다. 고의적으로(vorsätzlich) 또는 태만하여(fahrlässig)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그 위반을 통해 資本會社 또는 콘체른에서 발생한 손해를 賠償(Ersatz)할 책임이 있다.

주의를 태만하여 행동한 관련자의 賠償責任(Ersatzpflicht)은 한 회계감사에 대해 50만 마르크로 제한된다. 회계감사에 다수의 인이 참여하였거나, 다수의 인이 책임져야 할 행위의 배상과 관련된 경우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며, 다른 관련자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와 관계없이 마찬가지로의 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상책임은 회사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며, 사원이나 제3자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23 HGB). 會計監査人은 적절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4 WPO).

감사수수료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다(§ 55 WPO). 일반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과 함께 시간보수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사례비가 지급된다.

#### 4. 콘체른 會計監査

##### 가. 會計監査義務

§ 290 HGB에 따라 資本會社 형태의 모회사에 의해서 작성되는 콘체른 決算書와 콘체른 狀態報告書는 會計監査人을 통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316 Abs. 2 HGB). 다른 법적 형태의 기업도 공시법에 따라 콘체른 決算書와 콘체른 狀態報告書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11, 14 PublG).

이러한 의무적 회계감사(義務監査)와 달리 자율적 회계감사(任意監査)도 있다. § 290 HGB § 11 PublG에 따라 콘체른 決算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이 작성한 콘체른 決算書가 콘체른의 連結構造上 상위 모기업에 대해 “만족할 만한”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무가 있는 콘체른 決算書 감사에서 적용되는 원칙들을 기준으로 會計監査가 이루어진다(§§ 291, 292 HGB; § 11 Abs. 6 PublG).

#### 나. 會計監査人の 選任

##### (1) 콘체른 決算書 會計監査人

콘체른 決算書의 會計監査人は 콘체른 모회사의 직원들에 의해 선임된다(§ 318 Abs. 1 HGB). § 319 HGB에 따라 선임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인회계사가 會計監査人으로 선임될 수 있다. 콘체른을 위해 會計監査人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콘체른 決算書에 포함되는 모기업의 年次決算書를 감사한 會計監査人이 콘체른 決算書의 會計監査人으로 선임될 수 있다(§ 318 Abs. 2 HGB).

##### (2) 連結對象企業의 會計監査人

콘체른 決算書의 會計監査人이 동시에 콘체른 決算書에 포함되는 기업의 會計監査人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콘체른 決算書에 포함되는 모회사 年次決算書의 會計監査人에 대해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콘체른 決算書에 포함되는 자회사의 年次決算書 會計監査人에 대해

서도 특히 적용된다. 자회사들이 규모, 법적형태, 사업분야에 의해 회계감사의무가 있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콘체른 決算書의 會計監査人은 이들 자회사의 회계감사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會計監査人이 자격요건에서 문제가 없는 한 (§ 317 Abs. 2 Satz 2 HGB), 연결대상이 되는 자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콘체른 會計監査 內容

콘체른 決算書의 會計監査人은 콘체른 決算書가 이와 관련된 규정들에 상응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 감사에서는 연결범위에 대한 감사, 연결되는 기업들의 年次決算書의 適正性에 대한 감사,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年次決算書를 콘체른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計定認識 및 評價에 관한 原則에 따라 전환시켰는지에 대한 감사, 연결과정에 대한 감사, 콘체른 決算書와 콘체른 狀態報告書의 調和與否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된다.

##### (1) 連結範圍에 對한 監査

연결범위에 대한 감사에서는 § 290 HGB 및 § 11 PublG에 따라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기업들이 콘체른 決算書에 포함되었는지와 §§ 295, 296 HGB에 따라 콘체른 決算書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의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한편 § 310 HGB에 따라 共同企業의 포함에 대한 검토와 關係會社(assozierte Unternehmen: §§ 311, 312 HGB)에 대한 출자지분에 대한 검토도 연결범위에 대한 감사에 포함된다.

## (2) 連結되는 企業들의 年次決算書에 대한 監査

콘체른 決算書는 연결되는 기업들의 個別年次決算書(소위 상사대차대조표(Handelsbilanz) I; HB I)를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감사 활동은 이미 상사대차대조표 I의 수준에서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 317 Abs. 2 Satz 1 HGB에 의해 콘체른 決算書 會計監査人은 연결되는 個別年次決算書를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 법률규정의 내용을 볼 때 이러한 감사권한은 적정한 회계처리의 원칙의 준수여부에 한정된다. 연결되는 기업들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 316-324 HGB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았거나 EC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제8차 EC회계지침(회계감사관련)에 따라 자격있는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만 상사대차대조표 I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EC域外 소재하는 연결대상기업의 年次決算書에 대한 콘체른 決算書 會計監査人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들 個別年次決算書가 제8차 EC회계지침에 따른 會計監査人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監査인에 의해, §§ 316-324 HGB의 규정에 상응하여 회계감사가 수행될 때이다.(§ 317 Abs. 2 Satz 2, 3 HGB).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감사가 앞의 이유들로 인해 실시되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콘체른 決算書 會計監査人은 § 320 Abs. 3 HGB에 따라 모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그들의 會計監査人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情報要求 및 열람권한(年次決算書, 장부, 자산, 부채 등의 내용)을 갖는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콘체른 決算書 會計監査人은 연결대상이 되는 個別企業의 年次決算書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와 자신의 회계감사활동에서 다른 會計監査人의 감사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3) 補完計算에 對한 監査

§§ 300 Abs. 2 u. 308 HGB에 따라 個別年次決算書로부터 콘체른 決算書로 이전되어오는 계정항목들은 통일적인 원칙에 따라 계상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작성되었고 경우에 따라 약간씩 다를 개별 상사대차대조표를 콘체른 決算書상 통일적인 계상 및 평가방법에 따라 이전했는지 여부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를 補完計算에 對한 監査(Prüfung der Ergänzungsrechnungen)라 한다.

연결되어야할 年次決算書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의 상사대차대조표 I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 자회사 年次決算書의 외화표시를 콘체른의 年次決算書상 화폐단위로의 환산(§ 317 Abs. 2 HGB)과 관련해 추가적인 會計監査를 실시해야 한다.

## (4) 連結過程에 對한 監査

콘체른 決算書 회계감사의 핵심분야가 連結過程(Konsolidierungsvorgänge)이다. 연결과정이라함은 자본연결(Kapitalkonsolidierung, §§ 301, 302, 307, 309 HGB), 부채연결(Schuldenkonsolidierung, § 303 HGB), 중간이익의 제거(Zwischenerfolgseliminierung, § 304 HGB), 손익계산서의 연결(§ 305 HGB), 조세와 관련된 연결(§ 306 HGB) 등을 말한다. 여기서 열거된 모든 경우에서 연결분개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콘체른에 의해 작성된 연결정보의 신뢰성 관점에서 콘체른 내부의 통제시스템의 기능적 유용성도 감사해야 한다.

## (5) 콘체른 決算書와 콘체른 狀態報告書에 대한 監査

§ 322 Abs. 1 HGB에 의해 요구되는 기업의 사업상황과 관련된

총체적 평가를 내릴 수 있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감사해야할 내용은 제출된 콘체른 決算書가 적정한 회계처리의 원칙을 고려하여 콘체른의 상황에 대한 모습의 실제적 관계를 전달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과 狀態報告書가 콘체른 決算書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감사한다.

## 라. 콘체른 會計監査機構 問題

大規模 國際的 콘체른의 경우 콘체른 決算書 會計監査人은 무엇보다도 다른 會計監査人의 監査結果를 根據로 해야 하기 때문에 個別年次決算書 회계감사의 경우와 달리 콘체른 決算書 회계감사에서는 會計監査機構(Organisation der Konzernabschlußprüfung)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작성된 個別年次決算書를 연결대차대조표로 옮겨오는 조치들에 대한 감사, 개별대차대조표를 콘체른 決算書의 화폐단위로 환산한 것에 대한 감사, 개별적인 연결조치들을 콘체른 決算書 會計監査人의 통제관점에서 감사하는 것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회계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특히 소위 자체적인 連結 會計指針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콘체른 경영진은 個別企業들 수준까지 통일적 평가와 통일적 계상을 확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결회계지침은 연결과 관련해 필요한 계정과목변경, 조정 및 상계를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콘체른 내부보고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콘체른 決算書 會計監査人이 連結 會計指針 및 내부보고 시스템의 정확성과 법률적합성에 대해 확신이 있는 경우 會計監査人은 그의 가장 큰 주안점을 내부통제시스템의 기능유용성과 제3자의 會計監査人에 의해 이루어진 會計監査意見의 信賴性을 평가하는

데 맞추어야 한다.

#### 마. 會計監査意見

個別年次決算書에 감사의견의 제시, 한정 및 거부 그리고 個別年次決算書의 감사의견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한 규정과 원칙들은 콘체른 決算書의 감사의견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의미로 적용된다. 모회사의 年次決算書에 대한 註釋과 콘체른 決算書에 대한 註釋이 통합되고 회계감사보고서가 통합되어 공동으로 공시되는 경우 콘체른 決算書에 대한 監査意見과 母會社の 年次決算書에 대한 監査意見은 통합되어 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의견의 핵심문장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본인/우리의 義務에 따른 會計監査結果 年次決算書와 콘체른 決算書의 회계처리는 법률규정에 맞는다. 年次決算書와 콘체른 決算書는 적정한 회계처리의 원칙을 고려하여 資本會社와 콘체른의 자산상태, 재무상태, 수익상태의 모습에 상응한 실제적 관계를 전달하고 있다. 資本會社와 콘체른의 狀態報告書는 年次決算書와 콘체른 決算書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5. 會計監査報告書

#### 가. 會計監査報告의 原則

회계감사의무가 資本會社の 회계감사에 대해 § 321 HGB는 會計監査人이 그의 회계감사결과에 관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會計監査報告書(Prüfungsbericht; auditors long form report)라 한다. 이 규정은 회계감사의무가 있는 다른 회사들의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58 Abs. 1 GenG, § 27 Abs. 2 KWG, § 57 Abs. 2 VAG 및 동일한 의미로 § 6 PublG에 따른 회계감사). 회계감사의 유형과 범위에서 법률상 의무적 회계감사(의무감사)에 상응하는 자발적 회계감사(임의감사)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원칙들은 유사하게 적용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目的은 독립적 會計監査人에 의한 회계감사의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보고는 공정성, 완전성, 진실성,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회계감사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사실의 확정에 제한되어야 하며 각각의 측면에서 본 평가들을 포함해야 한다.

#### 나. 會計監査報告書 作成의 一般原則

회계감사보고서의 목적은 독립적 회계감사인이 수행한 회계감사의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완전하고 목적적합적으로 전달하는데 있다. 따라서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公正性(Unparteilichkeit), 完全性(Vollständigkeit), 眞實性(Wahrheit) 및 明確性(Klarheit)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이 요구하는 바는 우선 객관적인 확정내용에 제한되며, 통일적 평가를 내포하는 객관적인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회사의 법률상 대리인과 차이나는 의견과 그 이유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완전하고 목적적합적인 회계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

은 회계감사인인 그가 내린 판단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법률상으로 요구되는 모든 사항들은 물론 이해관계자가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회계감사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明確性の 要件은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가 모든 중요한 감사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목차가 제시되어야 하고,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요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회계감사인인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모든 설명들은 그 자체로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제3자에 의해 획득한 정보에 대한 감사내용은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다. 個別企業 會計監査報告書

##### (1) 法律上 必要한 內容

회계감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 이외에 § 321 Abs. 1 HGB는 회계감사보고서에서 會計處理, 年次決算書 및 狀態報告書가 법률규정에 상응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법률상 대리인이 요청된 설명과 입증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특별히 확정할 것을 정하고 있다. 추가적인 의무적 기재사항으로는 年次決算書의 항목들의 구분과 이에 대한 충분한 說明을 하는 것이다.

한편 直前會計年度에 대비해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에서 否定的 變化의 내용과 당기순이익에 사소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 등을 열거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법률상 문구에 따라 열거된 의무적 기재사항들이 회계감사보고서의 유형과

범위를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취지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법률상 문구에 따라 열거된 의무적 기재사항을 넘어서 기재될 수 있다.

독일의 회계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세 部分으로 구성된다. 본문과 설명부문 및 부록으로 구성된다. 本文(Hauptteil)은 會計監査人이 내린 중요한 확정사실들을 포함하는 것이며, 説明部分(Erläuterungsteil)은 年次決算書의 개별 계정과목들의 구분과 설명을 담고 있으며, 附錄(Anlagen)에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註釋 및 狀態報告書와 會計監査人의 회계감사 수임조건 등을 담고 있다. 회계감사보고서의 본문의 일반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다.

- A. 회계감사 수임과 회계감사의 수행
- B. 법률적 관계의 변동사항
- C. 경제적 기초의 진전상황
- D. 회사의 年次決算書
  - I. 각 항목들의 현황, 계정구분 및 평가
  - II. 年次決算書 분석(자산상태 및 재무상태)
  - III. 대차대조표의 중요한 내용
  - IV.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한 당기순이익 계산(수익상태)
  - V. 부정적 변경사항과 사소하지 않은 손실의 확정
- E. 회계처리
- F. 狀態報告書
- G. 결어 및 감사의견

회계감사보고서의 설명부문에서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하는 의무는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제한된다. 주석은

그 자체로서 내용을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정보에 대해 그 내용을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할 의무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에서 ‘其他 資金關聯 義務(sonstige finanziellen Verpflichtungen)’와 관련해서만 내용을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계정 순서대로 실시하면 된다. 즉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 맨 위의 항목에서부터 시작하여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 항목으로 마치면 된다.

## (2) 資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에 對한 說明

현행 법률은 회계감사인이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에 대해 각각 나누어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법률상 문구에서는 한편 직전회계년도에 대비해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에서 나타난 추가적으로 나타난 부정적 변화의 내용 및 당기순이익에 사소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 등을 열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의 목적은 이를 넘어서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설명에 있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은 한편으로는 감사의견을 제시할 때 年次決算書가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 기업의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에 대한 실제적 관계를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법 제321조 제1항 제4문 및 제2항의 문제 등이 있는 경우 이것이 갖는 경제적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즉 직전회계년도에 대비해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에서 나타난 부정적 변화의 내용 및 당기순이익에 사소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제321조 제1항 제4문)과 회사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사실 또는 회사의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실, 법규, 회사계약 또는 법률상 대리인의 정관위반을 인지할 수 있는 사실(제321조 제2항) 등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회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연차결산서에 대한 재무제표분석(매출액이익율 등 각종 비율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흐름계산(Kapitalflußrechnungen)과 기업실체유지와 관련된 정보로 보완될 수 있다. 실무상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르다. 이는 회계감사인이 해당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 (3) 企業狀態에 對한 說明의 具體的 內容

회계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좀 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회사의 경제적 상태를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특정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은 직전회계년도에 대비해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에서 나타난 否定的 變化의 내용과 당기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損失을 열거하고 이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보고서의 독자가 一目瞭然하게 부정적 변화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지 보고서 작성의무의 확대와 관련된 것이며, 회계감사대상 및 내용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고의무는 年次決算書, 상태보고서,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인이 통상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검토하게 되는 관련된 서류에 있는 부정적 내용들에 대한 것

이다. 법률에서는 부정적 변화의 내용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이 두가지 구분에 따른 영역은 서로 교차될 수도 있다.

否定的 變化(nachteilige Veränderungen)에 대한 보고의무의 기준은 직전년도와 비교한 악화여부이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기간동안의 추세와 관련될 수도 있다.

資産狀態(Vermögenslage)의 부정적 변화는 우선 대차대조표상 자산상태의 악화여부가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비밀적립금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가치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자산상태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收益狀態(Ertragslage)의 부정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경영관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익계산서를 보다 자세하게 세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도 있다.

財務狀態(Finanzlage)의 부정적 변화는 통일적 또는 직접적으로 측정가능한 개념으로 정리될 수는 없다. 회계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구조의 변화, 만기구조, 자본조달여력,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원천 등을 검토하여 그 변화가 부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보고할 수 있다.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損失(nicht unwesentliche Verluste)에 대한 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구체적 경우의 사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는 각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 지역적으로 구분된 또는 다른 관점에서 구분된 부분적 시장의 규모 또는 개별 계약 및 자산

등과 관련해서 달리 평가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따른 금액들은 또한 각 개별기업의 규모 및 구조, 활동분야 등에 따라 다르며, 무엇보다도 발생금액의 상대적, 절대적 수준에 따라 다르다.

새로운 보고의무에 따라 특정한 부정적 변화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의 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법률제정취지로 볼 때,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損失의 내용을 회계감사보고서에서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에 관한 일반적인 제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 (4) 會社存續을 危殆롭게 하는 事實과 法律上 代表者の 定款 違反事實 說明

상법 제321조 제2항에 따르면 회계감사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한 회사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사실 또는 회사의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실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법률, 회사계약 또는 정관의 위반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사실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회계감사인의 보고의무). 마찬가지로 상법은 보고의무를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업무의 적정한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개별 경우에 따라 확정되지 않는 경제적 관계, 중점적인 회계감사내용과 회계감사의 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고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관련된 입법취지인 警告機能이 분명하게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보고서작성에서 회사의 감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특별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있는 사실들에 대

해 사전에 특별 보고서 형태로 또는 서류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목적적합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보고서에서 설명해야 한다.

#### (5) 會計監査結果의 要約

회계감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의 결과를 요약하는 것이다. 이 요약부분에서는 상법 제322조 제4항 제2문에 따라 감사의견 또는 의견거부의 표시와 함께 회계감사인인 생각한 중요한 감사의견이 제시된다. 감사의견이 한정 의견 또는 의견거부의 경우 그와 관련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상법 제321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에 署名해야 한다. 회계감사보고서에 서명하는 경우 서명장소와 일시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

#### 라. 콘체른 會計監査報告書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규정은 § 321 HGB에 따라 콘체른 決算書의 회계감사보고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독일 상법은 年次決算書 및 콘체른 決算書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하나의 조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年次決算書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와 콘체른 決算書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의 규정들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한 회계감사보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들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체른의 자산상태, 재무상태, 수익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해 모회사의 年次決算書에 대한 설명에 비해서 추가적인 사실들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개별항목들에 대한 구분과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콘체른 決算書 註釋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콘체른 決算書에서의 통일적 계상, 통일적 평가, 외화환산 및 연결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앞서 자세히 다루었던 상법 제321조 제1항 제4문에 따라 보고의무가 있는 불리한 변화내용과 중대한 손실 및 제321조 제2항에 따른 회사를 위협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콘체른 회계감사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의무가 있다.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한 보고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서는 콘체른의 관점에서 회계감사인이 판단해야 한다.

회계감사 대상인 콘체른 決算書의 특징상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콘체른 會計監査人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전부연결, 비율연결 그리고 지분법적용 등과 관련된 기업의 범위, 구분 및 변경 내용들이다. 둘째, 콘체른 결산서 작성일과 콘체른 결산서에 포함되는 개별 기업들의 年次決算書의 작성일이다. 셋째, 연결대상인 개별기업 年次決算書의 회계감사의 참고 및 그 적정성에 대한 확정에 관한 사항이다. 넷째, 콘체른 내 통일적인 회계처리를 포함한 개별 年次決算書의 변경, 연결방법 및 개별 연결방식들의 적용내용이다. 다섯째, 내부거래이익의 제거 및 필요한 경우 외화환산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과거와 달리 콘체른 회계감사보고서에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콘체른 會計監査報告書와 母會社の 會計監査報告書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콘체른 회계감사보고서와 모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가 統合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법 제298조 제3항에 따라 콘체른 주식과 모회사의 年次決算書의 註釋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콘체른 결산서와 모회사의 연차결산서

가 함께 공시되어야 한다. 통합된 회계감사보고서는 분리해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필요했을 모든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마. 任意會計監査에 대한 會計監査報告書

자발적인 任意監査(freiwillige Prüfung)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범위는 회계감사위임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임의감사의 결과로 상법 제322조에 근거한 감사의견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임의감사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상법상 의무감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6. 會計監査實務基準

公認會計士協會(Institut der Wirtschaftsprüfer in Deutschland e.V.)는 1988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會計監査實務基準(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Abschlußprüfung : GoA)을 제정했다. 이 회계감사기준은 年次決算書 작성에서 기본이 되는 正規簿記의 原則(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GoB)에 상응하여 연차결산서 회계감사에서도 적용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정규부기의 원칙과 달리 회계감사실무기준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會計監査實務基準은 연차결산서 회계감사에 대한 적절한 계획과 감독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기초적 평가

와 최초의 분석적 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정보들을 기초로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회계감사실무기준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거래 및 대차의 검토를 통해서 자산과 부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 항목들이 제대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여부, 거래는 잘 정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확인작업이 유형자산에 대한 것인 경우 회계감사인은 실제 재고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몇몇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자산이 제3자에 의해 보유되고 있으며,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에 의해 물리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유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한다.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이 금액에서 매우 중요한 경우 몇몇 항목을 선택하여 확인한다. 확인을 위해 해당 관련 당사자에게 우편 등으로 문의를 하고 그 회신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 한편 은행계정잔액, 제공한 보증의 내용, 어음에 배서한 내용, 기타 금융 관련 계약사항 등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모든 종류의 사업관계와 관련한 은행확인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경우 연계된 거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會計監查實務基準에 따를 때, 자회사 또는 지점에 대한 다른 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외국의 회계감사인의 경우 독일 회계감사인은 외국 회계감사인이 유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부 회계감사자에 의해 수행된 회계감사가 외부회계감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다만 회계감사의 범위를 정할 때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회계감사실무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률규정과 정관상의 규정들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
- 정규부기의 원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
- 전문적인 공시내용의 고려
- 연차결산서 회계감사의 계획과 감독
-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
- 재고입증조사에 대한 감사
- 제3자의 회계감사 결과의 이용
- 완전성선언에 대한 준수
- 감사실행의 입증

회계감사실무기준은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종업원은 적절하게 지시를 받고 감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작업용지 및 관련 서류의 검토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은 잘 준수되어야 한다. 회계감사인원은 회계감사의 계획과 회계감사 절차의 내용, 범위 및 결과 등을 적절하게 기록해야 한다.

## IV. 要約 및 示唆點

### 1. 要約

#### 가. 獨逸 年次決算會計의 要約

본 연구에서 논의한 독일의 상사회계, 즉 연차결산회계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독일의 연차결산회계는 우리나라 영·미권 국가와 달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규부기의 원칙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규모 및 업종 등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결산회계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콘체른 연차결산회계와 관련해 연결 범위에서 실질지배력 기준이 확고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1) 商法에 根據한 年次決算會計

첫 번째 특징은 독일의 年次決算會計의 發展過程을 정리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의 회계법은 역사적으로 주식법 등 법률중심의 제도적 기초위에 발전해왔다. 독일의 회계법 형성의 분수령은 두 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1965년 주식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주식법 개정을 통해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새롭게 분류하였고, 대차대조표 항목의 분류도 개선되었다. 비밀적립금의 설정가능성을 대폭 배제시켰으며, 이익처분에 대한 개혁도 있었다. 이 밖에도 주주의 법적 지위를 제고시켰으며, 통일적 콘체른 법규도 마련하게 되었고, 공시확대와 경영

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게 되었다.

독일의 연차결산회계의 법적 토대의 확립과 관련한 또 다른 분수령은 1985년에 유럽공동체 회계지침의 독일 국내법의 변환과 함께 도입된 상법 제264조부터 제335조까지의 규정이다. 1957년 로마조약 이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재화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경제적 후생의 증가라는 경제공동체의 기본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공동체내 기업활동에 대한 회계정보의 통일이 무엇보다 요구되었고,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회계기준의 조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會計基準의 調和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대신 유럽공동체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회계제도의 특이성을 살리면서 유럽공동체 차원의 기업회계관련 조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자본회사들(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각국 회계규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세 개의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1978년에 年次決算과 註釋의 樣式과 內容에 關한 貸借對照表指針이 제정되었고, 1983년에는 콘체른 會計에 關한 콘체른指針이 제정되었으며, 1984년에는 義務的 會計監査 受任者の 承認에 關한 會計監査人指針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지침들은 그 자체로서 유럽공동체의 모든 회원국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침들이 각 회원국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지침들을 국내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독일은 이 지침들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1985년 12월에 EC會計指針變換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통해 상법에 도입된 규정들로 독일 연차결산회계와 관련된 회계법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회계법 규정들은 모든 기업들의 기본적인 회계의무인 연차결산

서의 작성, 보고 및 감사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렇게 유럽공동체의 조화된 회계기준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독일기업들에게 적용해오던 전통적인 연차결산회계가 모두 바뀐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과거 여러 회사형태에 따라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회계법들이 하나로 통합되게 되었고, 모든 기업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 회계법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독일의 전통적인 연차회계의 특징들은 여전히 회계법에 남아있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의 형태와 관련해 영미식의 매출원가법을 인정하였지만, 독일의 전통적인 總原價法이 계속 사용될 수 있게 하였다.

## (2) 正規簿記原則(GoB)을 통한 柔軟性 確保

독일 연차결산회계가 상법상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회계규정의 경직성이 문제될 수 있었다. 법률은 개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직성의 문제를 갖을 수 밖에 없다. 상법에 근거한 독일 연차결산회계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正規簿記의 原則이 실무에서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상법에 연차결산회계와 관련해 일반원칙만을 규정하고, 실무상 연차결산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원칙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사회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 (3) 資本會社の 三分을 통한 年次決算會計의 適用

독일에서 회계법의 통합을 통하여 개인상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연차결산회계에 관한 필수적 사항들이 商法에 총괄적으로 규정되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자본회사를 規模에 따라 三分하여 대규모 자본회사에만 모든 규정들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中規模 資本會社, 小規模 資本會社들과 個人商人을 포함한 非資本會社들에게는 결산작성 및 공시의 범위 그리고 감사 등과 관련하여 경감조치의 허용 및 면제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회사의 三分에 의한 연차결산회계의 적용으로 독일 기업의 결산회계는 독일의 모든 상인에 대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基本的 決算會計와 특정 규모의 자본회사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補充的 決算會計로 구분된다. 기본적 결산회계의 핵심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이다. 보충적 결산회계로는 中規模 이상의 자본회사들에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외에도 註釋을 결산요소로서 새로이 추가하고 있다는 점, 狀態報告書(Lagebericht)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三分에 의한 연차결산회계의 적용은 연차결산서의 作成期限 및 確定 등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 소규모 자본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개월 내에 작성해야 하지만, 중규모와 대규모 자본회사의 경우 3개월 내에 작성해야 한다. 年次決算書의 確定과 관련해 소규모 자본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1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하지만 중규모 및 대규모 자본회사는 회계연도 종료후 8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양식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자본회사의 三分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소규모 자본회사의 경우 대차대조표의 중요한 항목들만을 나타내고 있는 약식 대차대조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중규모의 資本會社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경감은 없으며, 다만 대차대조표의 공시와 관련해서는 制限的 意味의 貸借對照表를 사용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에서도 資本會社의 규모와 관련해 경감사항이 규정되

어 있다. 小規模 또는 中規模 資本會社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타 수익, 재고변동 및 중요한 비용항목들을 總利益이란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묶어서 표시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소규모 및 중규모 자본회사의 경우 非經常收益 및 非經常費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자본회사의 三分에 의한 연차결산회계의 적용을 통해 회계법의 실제 운용에 통일성을 보장하면서 실제 유용성을 높이고 있다.

#### (4) 콘체른 連結에서 實質支配力 基準의 確固한 適用

독일에서 콘체른 결산서는 콘체른 貸借對照表, 콘체른 損益計算書 및 콘체른 註釋으로 구성되지만, 콘체른 決算書を 보완해서 사업의 진전 및 콘체른의 상황에 대해 보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콘체른 狀態報告書도 작성된다. 콘체른 결산서의 작성목적은 법률적으로 독립체를 이루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체를 구성하는 기업집단의 자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콘체른 연차결산서의 작성과 관련해 실질지배력 기준을 확고하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 상법에 따른 콘체른 결산서 작성 의무(§ 290)는 ‘統一的 經營管理의 概念’ 또는 ‘統制概念’에 따라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성립하면 발생한다. 통제개념에 따라 콘체른 決算書を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한다는 자본기준이외에 두가지의 실질지배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母會社가 관리기관, 경영기관 또는 감사기관의 構成員 中 過半數를 任命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會社의 社員인 경우이다. 둘째, 母會社가 子會社와 支配契約를 체결하거나 자회사의 定款上 規程을 통해 支配的 影

響力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콘체를 결산서의 작성과 관련해 실질지배력 기준을 확고히 적용함으로써 기업집단에 대한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나. 獨逸 會計監査制度의 要約

독일 회계감사제도는 제8차 EC회계지침인 會計監査人指針이 1985년 독일 국내법으로 변환되면서 資本會社(Kapitalgesellschaften)의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이 통일되게 되었다. 독일 회계감사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차결산회계에서 적용되었던 자본회사의 三分에 따른 구분을 회계감사의 의무와 관련해서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회계감사를 법정 의무감사와 임의감사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지만 준공인회계사제도를 두어 세무사와 변호사에게도 추가로 특정자격요건을 갖추면 일정범위의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 (1) 資本會社の 三分과 會計監査義務

독일의 회계감사가 法律上 義務的인가 아닌가는 資本會社の 規模에 따라 달라진다. 자본회사의 구분은 연차결산회계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독일에서 상법에 의해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본회사는 중규모 자본회사와 대규모 자본회사이다. 반면 소규모 자본회사의 경우 회계감사의무는 없다. 소규모의 자본회사이더라도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동 자본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소규모 자본회사의 감사는 대규모 자본회사에 대한 감사규정이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공개기업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資本金會社 이외의 다른 법적 형태의 기업들 중 기업공시법에 의해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는 기업들도 회계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형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金融業과 保險業과 같은 특정 업종은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규모나 기업의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2) 義務監査와 任意監査의 區分

독일의 회계감사업무는 크게 의무감사와 임의감사로 구분될 수 있다. 자본회사의 三分에 따라 회계감사의무여부가 결정되는 것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회계감사를 義務監査라 한다.

반면 의무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자본회사 또는 인적회사 등도 출자자 또는 채권자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받는 회계감사를 任意監査라 한다.

회계감사를 의무감사와 임의감사로 구분한 것은 회계감사업무의 분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 이외에도 의무감사와 임의감사는 회계감사의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의무감사는 상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임의감사의 경우 회계감사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계감사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 (3) 會計監査業務의 分擔

독일에서 會計監査는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가 담당한다. 공인회계사는 자본회사의 규모 및 회계감사의 구분(의무감사와 임의감사)에 관계없이 모든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회계감사업무는 공인회계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감사의 업무중 일부는 準公認會計士(Vereidigter Buchprüfer)가 수행할 수 있다. 준공인회계사는 중규모 資本會社의 의무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임의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준공인회계사를 통해 회계감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회계감사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독일에서 준공인회계사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중간에 위치한 자격제도이다. 준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별도의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따라서 세무사제도와는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응시자격이 稅務士 및 辯護士에게 주어진다는 측면과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다는 측면에서 세무사들은 준공인회계사가 쉽게 될 수 있다.

회계감사업무를 세무사에게 부여한다는 것이 세무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稅務士는 어렵지 않은 약식 시험을 통해 準公認會計士가 될 수 있으며, 준공인회계사가 되면 중규모 자본회사의 의무감사와 모든 임의감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2. 示唆點

年次決算會計의 중심을 이루는 독일 회계법의 발전과 엄격하면서도 유연성이 있는 독일의 회계감사제도는 국내 회계제도의 改善에

몇가지 시사점을 갖고 있다.

가장 큰 示唆點은 獨逸의 會計法 發展過程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의 회계법은 기본적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1931년의 주식령 개정, 1965년 주식법 개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고, 1985년 EC會計指針變換法の 제정에서도 그러하였다. 유럽경제통합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자유롭게 유럽의 어느 지역에든지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속에서 기존의 독일식 상사회계만을 적용할 수 없었다. 유럽공동체의 여러 회원국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독일 회계법에 대한 개정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최근에 독일 기업들이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국제적 자본조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國際會計基準을 적용하여 작성된 회계정보의 요구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필요에 대응하여 독일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결산서를 작성하는 것도 인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독일 회계법의 발전과정은 국내 회계제도의 개정과정에 좋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국가의 회계제도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가의 기업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계제도라는 사실과 이론적으로 우수하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企業이 절실히 必要로 하는 부분에서 적절한 회계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독일의 연차결산회계 및 회계감사의 논의와 관련해 미시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콘체른 결산서의 작

성과 관련된 實質支配力 基準이며, 다른 하나는 會計監査業務의 分擔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콘체른 결산서의 작성과 관련해 독일은 실질지배력 기준을 명백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出資關係에서 지배력이 확고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경영진의 임명과 해임권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종속회사 관계가 성립하면 콘체른 결산서 작성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역시 출자관계는 약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연결시키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질지배력 기준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를 말하고 있어서 자본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질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IMF 등이 結合財務諸表 작성의무화를 요구한 것도 국내에서 진정한 실질지배력 기준에 근거한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지 않다는데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처럼 명실상부한 實質支配力 基準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회계감사제도에서 監査業務의 分擔이 갖는 시사점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논의했듯이 독일에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간 업무분담과 관련해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논쟁이 있었으며, 양 이해관계자 집단이 타협을 통해 준공인회계사 제도의 형식을 빌어 분쟁을 해결하였다.

國內에서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업무는 상당 부분 서로 겹치고 있으며, 향후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더욱 더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자간에 業務領域과 관련해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이 있을 경우, 한국과 독일간 여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獨逸의 先例는 하나의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韓國租稅研究所 研究委員 名單

| 職 位     | 姓 名   | 略 歷              |
|---------|-------|------------------|
| 所 長     | 具 鍾 泰 | 韓國稅務士會 會長・經營博    |
| 研 究 委 員 | 高 承 禧 | 亶國大 教授・經博・稅務士    |
| "       | 郭 泰 元 | 西江大 教授・經博        |
| "       | 金 光 洙 | 江原大 教授・經營博       |
| "       | 金 東 建 | 서울大 教授・經博        |
| "       | 金 完 石 | 서울市立大 教授・法博・稅務士  |
| "       | 金 完 淳 | 高麗大 教授・經博        |
| "       | 南 相 午 | 서울大 教授・經營博       |
| "       | 宋 雙 鍾 | 서울市立大 教授・法博・稅務士  |
| "       | 安 昌 滿 | 江南大 教授・法博        |
| "       | 尹 建 永 | 延世大 教授・經博        |
| "       | 尹 世 益 | 稅務大 教授・行政博・稅務士   |
| "       | 李 愚 澤 | 漢陽大 教授・經營博・稅務士   |
| "       | 李 哲 松 | 漢陽大 教授・法博        |
| "       | 鄭 泰 仁 | 江陵大 教授・經營博・稅務士   |
| "       | 蔡 丞 容 | 國稅廳・經營博・稅務士      |
| "       | 崔 洸   | 韓國外國語大 教授・經博     |
| "       | 崔 明 根 | 서울市立大 教授・法博・稅務士  |
| "       | 權 海 浩 | 稅務士・法博           |
| "       | 明 炯 植 | 稅務士・圓光大 教授・法博    |
| "       | 朴 憲 烈 | 稅務士・經營博          |
| "       | 徐 光 錫 | 稅務士・會計博          |
| "       | 李 澤 龍 | 稅務士・明知專門大 教授・經營博 |
| "       | 鄭 東 允 | 稅務士・培材大 教授・經營博   |
| "       | 趙 暎 來 | 稅務士・經營博          |
| "       | 洪 學 杓 | 稅務士・建國大 教授・行政博   |

① 資本市場 育成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宣 炳 完 1987. 3

李 愚 澤

② 特別消費稅制의 合理的 改善方向

金 完 淳 1987. 3

金 完 石

③ 租稅確定의 適正節次 保障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88. 2

金 冕 圭

李 承 文

④ 附加價值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1988. 3

李 愚 澤

⑤ 租稅審判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

李 哲 松 1988. 4

金 完 石

〔6〕 韓國稅制의 合理化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88. 7

〔7〕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申 東 雲 外 1988. 10

〔8〕 附加價値稅 納付稅額計算과

課稅特例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外 1991. 11

〔9〕 土地稅制의 長期的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93. 8

〔10〕 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李 鎭 淳 1994. 10

李 哲 松

〔11〕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5. 3

12 租稅制裁法制的 再整備

崔 明 根                      1995. 3

13 財産課稅行政의 民主的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5. 3

14 納稅者의 權益保障 提高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 2

15 移轉價格稅制와 多國籍企業의 防禦戰略

崔 鏞 善                      1996. 3

孫 閏 煥

16 所得稅制度 및 行政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6. 9

17 法人稅 課稅體系의 本質的 改編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6. 10

18 稅務士制度의 課題와 試驗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12

19 個別公示地價의 行政審判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7.3

20 稅務士의 租稅訴訟代理適格性에 관한 研究

李 哲 松      1997.12

21 稅務法人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8.3

22 稅務會計의 定立과 企業會計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8.3

## ■ 研究調査資料案内

---

### ① 西獨의 稅務士法에 관한 研究

李 承 文 1987. 2

### ② 主要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7. 3

李 愚 澤

李 哲 松

權 海 浩

### ③ 主要國의 個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8. 3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 ④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崔 炳 哲 1989. 3

李 哲 松

權 海 浩

吳 赫 柱

⑤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金 文 守 1993. 4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⑥ 獨逸의 稅務代理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4. 10

李 鍾 永

⑦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李 愚 澤 1995. 3

張 台 柱

⑧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研究

權 海 浩 1995. 6

⑨ 獨逸會社法

李 炯 珪 1996. 1

## ■ 研究調査資料案内

---

### [10] 獨逸稅務士法

崔 竣 濤      1996. 3  
李 承 文

### [11] 美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朴 胤 浚      1997. 2

### [12] 獨逸企業의 年次決算會計와 會計監査制度에 관한 研究

金 光 洙      1998. 3

調 査 報 告 書

第12輯(1998. 3)

獨逸企業의 年次決算會計와 會計監査制度에 관한 研究

---

1998年 3月 25日 印刷

1998年 3月 27日 發行

著 者 金 光 洙

發行人 具 鍾 泰

發行處 韓國稅務士會

137-073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電話(代) 587-6021

登錄 : 1988年 11月 11日(바 1184)

---

〈非賣品〉